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위해 244명의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평양화학

인류의 아름다움, 사회의 아름다움을 위한 태평양화학의 노력은 90년대에도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첨단의 신소재와 생명공학을 응용한 심도있는 피부과학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저자극성 화장품 뿐 아니라 각자 피부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성분의 화장품,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가정생활용품,

식품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품을 연구·개발해냈던 태평양화학 244명의 연구원들—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평양화학이 새롭게 펼쳐갈 90년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앞당겨 실현시킬 것입니다.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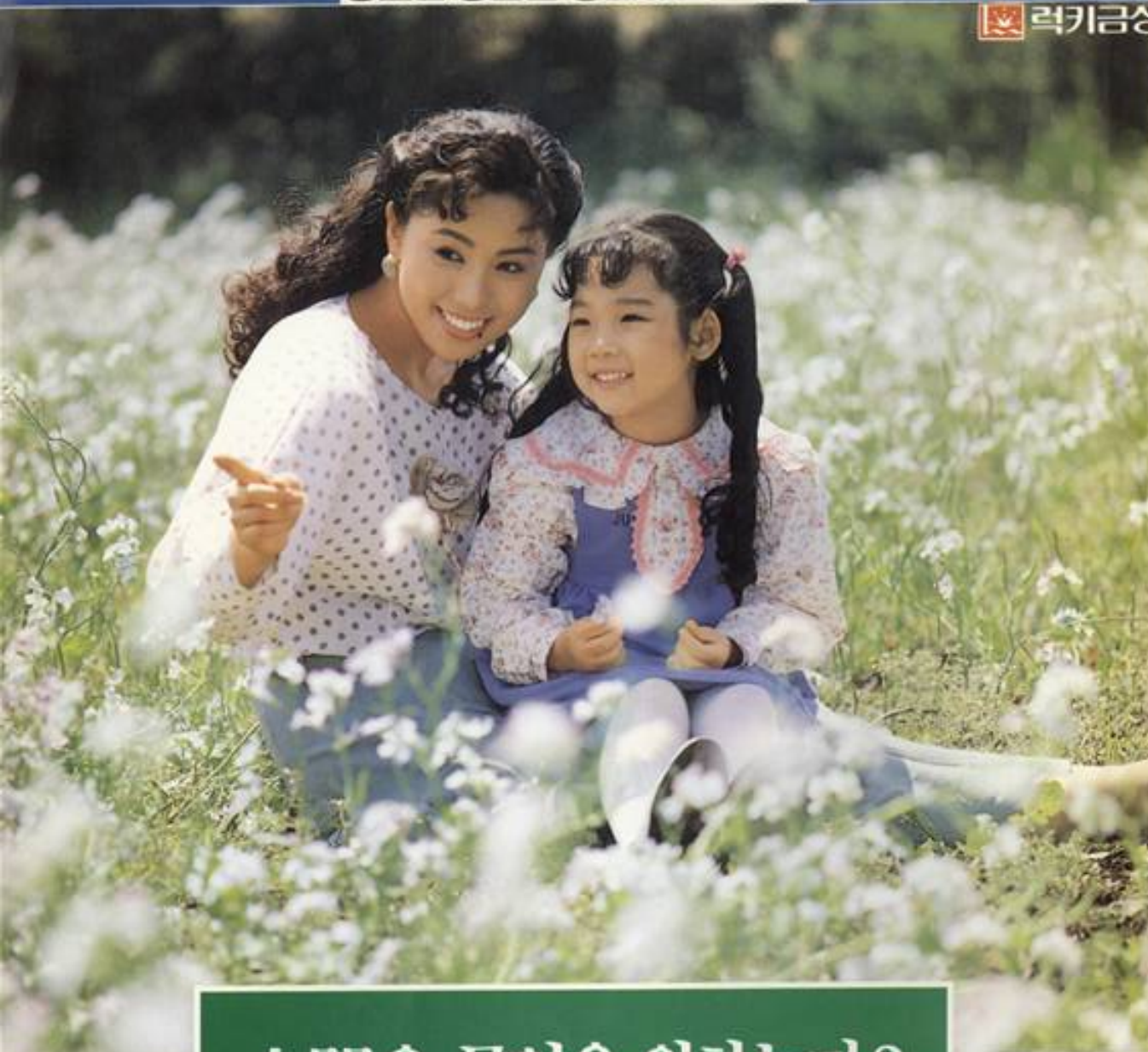
월간여성 1·2월호(통권282호) / 1991년 2월 10일
(매월 10일) 발행 / 1964년 6월 13일 등록(서)라-7
1965년 2월 25일 제3종 우편물(나)인가
(우편번호 140-013)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특집 I
'91년도 여성운동의
과제와 전망

특집 II
국내입양 권장세미나





人間은 무엇을 원하는가?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초우량 종합화학회사—럭키

풍요의 기쁨과 아름다운 꿈으로 충만한 생활—
언제나 밝고 건강한 웃음으로 가득한 생활—
바로 럭키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경영목표입니다.
초우량 종합화학회사—럭키는 소비자제일주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풍요한 21세기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럭키
LUCKY LTD.

월간 여성

1991년 1·2월호
통권 282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신년사 / 김경오
다 함께 힘찬 전진을

특집 I / '91년도 여성운동의 과제와 전망

6 '91년도 여성운동의 과제와 전망 / 이계순

8 연례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
좌담회

특집 II / 국내임양 권장 세미나

13 기초강연 / 장안형
국내임양의 활성화

16 발제강연 / 김가업
아동복지정책과 임양사업정책 방향

18 발제강연 / 상양혜
국내임양 활성화 방안 모색

21 발제강연 / 박동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임양

24 발제강연 / 이자숙
소외되고 버려진 어린 생명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가정'

26 발제강연 / 최금숙
국내임양에 관한 법적 고찰

29 발제강연 / 김사리
장시 행복을 맞은 후 영원한
방랑자로 남겨지는 해외임양아

32 종합토론

35 여성원로 초대석①
김옥라 선생님

38 이달의 여성계동향 / 홍은희

40 여성전문직 / 이현정
현북 전문가

42 근로여성고발장구 / 근로여성상담부
근로여성고발장구 운영보고서
(1990. 10. 1~12. 31)

45 신간안내 / 김가대
인간과 미디어 환경

46 여성문화 / 박금옥
「로젤」

48 매스컴에 비친 여성 / 매스컴모니터회
사중지의 중립성 요구되는
토론 프로그램

51 지방여성단체소식
경기도지역

54 소비자리포트 / 윤희진
직거래운동은 진정한 삶의
연대운동으로 발전해야

57 협의회 소식



59 우리들의 광장

65 주소록



'91년도 여성지도자
신년교례회

다 함께 힘찬 전진을

우리는 지난 한 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던 동·서독이 마침내 역사적인 통일을 이루었고 전후 4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우리나라와 소련과의 관계가 급진전하여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도 새로운 대화의 전기를 맞아 여협도 평화통일에 대비한 민족통일성 회의를 위하여 남북여성 교류를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성애 조선민주여성동맹위원장이 본회의 제의에 응하여 금년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할 경우 남북여성간의 교류는 활발해 지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 여성들이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또한 30년만에 지자체가 부활하여 3월에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치루어질 예정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성공을 위해서도 지방의회에 많은 여성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여성단체들이 여성후보자에게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여성들이 조직된 힘으로 많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일만이 앞으로 각종 여성정책이 용이하게 채택될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경오 (본회 회장)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범여성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사업으로는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과소비·폐쇄문화추방, 질서문화 정착 등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각종 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에는 걸프전쟁으로 인해 국내경제 사정이 더욱 나빠지고 에너지 절약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만큼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을 위해 다소의 불편은 감수하는 인내심이 요구되며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리 여성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올해에도 여성의 권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개정된 가족법의 정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여성의 부당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여론 환기, 여성 의식 고취, 법에 보장된 권리 찾기 운동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각종 성폭력을 방지하고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각종 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교육문제 해결에도 여성들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산적한 우리 사회 문제, 여성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여성단체들이 때로는 독자적으로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며 때로는 모든 여성단체들이 연계해 큰소리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성단체가 큰소리로 외쳐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여협을 찾아 주십시오. 26개 우리 회원단체가 한 덩어리가 되고 우리 여성계가 한 몸이 되어 다같이 힘차게 외쳐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내고 이로 인해 여성발전·사회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는 여성계가 한 목소리로 힘을 합쳐 내는 해,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각 단체가, 각 단체 회원이 노력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단체 여러분께 격려를 보내며 더 큰 도약을 위해 여협이 함께 걸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특집 I

'91년도 여성운동의 과제와 전망

'91년도 여성운동의 과제와 전망

지난 '90년은 한국사회에 있어 커다란 변혁기로 기록될 '80년대를 끝마치고 한 세기의 마지막 10년을 시작하는 희망과 반성속에 시작되어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작된 많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혹은 발전시켜야 할 신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원 선거가 치루어지게 되어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될 것이며, 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복지 및 소비자보호 문제와 환경보존문제 등 선진국 수준의 시민운동이 활발히 펼쳐질 것이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반영된 사치·폐패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시민정신을 고양하고자 건전생활운동을 전개실천하였으며, 날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는 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했던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활동이었습니다.



이계순 (장무 제2장관)

많은 여성들이 각자의 관심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양한 활동들의 공동분모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여성역할의 증대라는 점에서 여성단체들의 연합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업무를 전담하는 장무 제2 장관실에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합과 전진으로 도약하는 세기적 전환점에서, 내부적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여 사회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년은 연초부터 불어닥친 페르시아만 전쟁과 지방자치제 실시로 전개될 선거정국은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재도약의 전기로 삼기위해 전국 70여개 여성단체들의 연합운동을 통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깨끗한 선거분위기 정착, 폐패·사치풍조 추방, 호화혼수 근절, 김소한 명절, 에너지 절약 등 근검절약 저축운동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이미 많은 여성단체들이 꾸준히 전개해 온 것이지만 여성단체들의 연합운동을 통해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실천운동을 전개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 공공서비스분야에 자원봉사활동의 영역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별 자원활동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의 한 표본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여성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활동정신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적인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을 국·공립 연구기관의 강의내용에 반영하는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의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 중앙부처 공무원 훈련기관 → 지방자치단체 훈련기관 →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대기업 훈련기관으로 그 교육실시기관의 영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 여성의 사회진출이 왜곡되는 근본

금년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원 선거가 치루어지게 되어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될 것이며, 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복지 및 소비자보호 문제와 환경보존문제 등 선진국 수준의 시민운동이 활발히 펼쳐 질 것이 예상됩니다.

원인이 각급학교에서 진로지도를 할 때 여성의 진로에 대하여 고정된 편견을 가지고 선택을 강요하는데서 비롯된다는 분석을 토대로, 이 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저희 실은 여학생들도 능력과 적성에 맞게 진로를 결정하여 사회 각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과 협조하여 각급학교 학생용 및 사회교육용 자료를 개발·보급하려고 합니다.

● 통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여성단체회원 및 일반주부들에게 연수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남북한 여성관련법을 비교, 북한 가족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작년에 한 「북한여성의 실태」에 이어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 밖에도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와 홍보활동 및 정부간 정책연계기능 등 그간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성정책의 목표는 정부만의 힘으로 달성될 수는 없으므로 여성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문제는 사회의 다른 부분들과 서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여성들이 앞으로 모든 분야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역대 '올해의 여성' 상 수상자 좌담회



참석자 : 김영희(제1회 '올해의 여성' 상 수상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李慶子(제4회 '올해의 여성' 상 수상자·전국금용노동조합연맹 여성국장)
문순화(제5회 '올해의 여성' 상 수상자·한국화장품 노동조합 위원장)
李瑞子(제6회 '올해의 여성' 상 수상자·소설가)
사 회 : 김금래(본회 사무총장)
일 시 : 1991년 1월 17일
장 소 : 본회 회의실

■ 사회 :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좌담회에는 여협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올해의 여성' 상 수상자들을 모셨는데, 올해의 여성상 수상 배경이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의식화를 위해 노력하신 공로를 인정하여 드린 상이므로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두 여성운동가라고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여성운동가 여러분들과 '91년도 여성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각자의 분야에서 현재하시는 일과 관련하여 여성문제를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1회 수상자인 김영희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희 : 저의 경우 60년대부터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노동계 전반의 흐름을 되돌아 볼 때, 60년대는 산업발전의 계기가 경제발전이어서 근로자에게 상여금이나 수당을 주며 여성근로자를 많이 모집하던 때였고 70년대

는 직장을 가졌다는 것 만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하면 더 많이 일하고 수당이라도 더 탈까하고 장시간 근무, 야간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다.
80년대는 근로자들의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경직된 사회분위기에 실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70년대에 비해 6.29선언의 민주화 바람을 타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노총이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중간관리자가 힘이 되도록 만들어 주며 또한 여성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실제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여성운동 또한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여성운동이란 교육수준이 높고 혜택받은 사람들이 집단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미약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상을 주게 되어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여성단체가 개입하면서 실질적인 근로여성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의 여성운동이라면 여성단체가 옮겨 가도록 방향 유도에 신경을 썼습니다. 후원회가 있더라도 여성단체만의 후원회로 끌고 들어가는 역할, 그래서 여성단체가 어렵고 고충받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집단이 되도록 했습니다.

노총의 측면에서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여성지도자의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니다. 하부조직의 여성조합원수는 증가하였지만 상부조직의 참여자가 적어 그 힘이 약하고 중간의 지도자 역할이 미약하여 노조내에서의 여성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이 노총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 사회 : 노동 이야기가 나왔으니 계속 그 분야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지요.

■ 문순화 : 여협에서 주신 상이 노동운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노동상황에서 여성단체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이미 2년이 되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역할 즉 얻어내고, 받아내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일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시는데 이미 만들어진 법을 적용시키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전 산후 휴가를 주기로 통과가 되었다고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노동계에서 힘든 것은 여자위원장들의 숫자가 적고 물론 여성부장은 당연히 여성이 맡지만 조직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권한이 미비하여 여성대표자가 있더라도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그들 자체도 사회적 통념에 얽여 있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사회 :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성들이 왜 연계하여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실제 저희 여협에서 운영하는 근로여성상담창구의 고발사례를 보면 그런 문제들, 즉 법으로 보장된 부분은 스스로가 찾아서 쟁취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대신 해 주

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협에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투쟁하여 얻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간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노동상담실무자 교육등을 실시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교육도 하고 실제적 노동법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순화씨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중간에서 도와주고 격려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이 정착되도록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단체는 앞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해당 당사자가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할 때 법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김영희 : 10년의 공백후 노총에 다시 들어가 느끼는 점인데 노총이 해야 할



문순화

노동계에서는 여자위원장들이 숫자가 적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권한이 약하고 그들 자체도 사회적 통념에 얽여 있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집

'91년도 여성운동의 과제와 전망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중간관리자가 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수는 많지만 실제로 의사결정권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적으므로 여성의 문제가 제기될 때 외롭고 고독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여성을 위해 정책을 입안할 때 간혹 남성 간부들이 여성만이 여성문제를 입안해야 하느냐고 하지만 여성특유의 문제를 아는 것은 여성 자신입니다.

저희의 경우 연맹이 요구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있어 개인적 측면밖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대안으로 내 놓은 것이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입니다. 노동조합에 있어서 정책 입안하고, 중간에서 계획하고 밑에서 실천하도록 매체가 필요합니다.



李慶子

후생문제는 사회여건이 향상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면서 나아질 문제이지만 우선은 임금차별의 문제해결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 실제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이번에는 전국금용노조에 계시는 이경자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李慶子: 저희의 주요 문제는 임금입니다. 여성의 양대차별이 조기정년제와 임금차별문제였는데 이미 김영희선배가 정년문제를 해결하였고 후생문제는 사회여건이 향상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면서 나아질 문제이지만 우선은 임금차별의 문제해결이 시급합니다. 그래야만 하루를 일을 하더라도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 지금 근로여성문제뿐 아니라 여성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여성의 의식수준이 같이 따라주어야 하고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같이 인간화운동에 참여할 때 여성들이 더 빠른 속도로 여성해방을 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경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李慶子: 소설가는 소설로써 대중운동을 해야겠지요. 소설이란 특별히 소설을 감상할 수 있는 소수를 위해 쓰여서는 안됩니다. 쉽게 적은 돈으로 사서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적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성이고 대중운동이 되겠지요.

소설 '절반의 실패'를 쓰는데 10여년을 고생했는데 금년부터 쓰는 소설



李慶子

여성들이 세법이나 가족법 등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여성단체는 모든 여인이 세법이나 가족법에 관심을 갖게 되도록 여론조성을 해야 합니다.

은 '절반의 실패'가 가지고 있는 한계, 절반의 실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된 것을 씀으로써 제 몫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성들을 만나보면 주눅이 들어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랜기간 봉건생활의 신분차별로, 식민지 생활로 짓눌려 온데다 우리는 여자라는 것 때문에 또 짓눌려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밥을 못 찾는 것이지요. 내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제 작품을 통해서, 제 개인적 생활을 통해서 여성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남성을 돕는 일이다, 국가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작품을 통해서, T



金金래

여성에게 불합리하게 법을 제정했을 당시에 여성이 몇명이라도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남성위주의, 남성편의의 법제정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V, 라디오 등을 통해서 전파하려고 합니다.

■ 사회: 여성이 주눅들어 있다가 여성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일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주부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심리적으로 직장생활하는 여성들에 비해서 열등감을 갖게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부들도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여성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李慶子: 저는 그 문제를 세법과 연관지어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의식이 개혁되더라도 제도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여성이 자존심을 가질 수 없고 단지 공염불일 따름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세법이나 가족법 등

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여성단체는 모든 여인이 세법이나 가족법에 관심을 갖게 되도록 여론조성을 해야 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 직장, 각 학교의 어머니회, 대학의 총 여학생회, 기업의 직원연수담당자들에게 이에 대한 커리큘럼을 써서 제공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金慶子: 세법문제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법관계가 너무 어려워 세법에 관한 강의를 해 주는 것도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협에서도 생활법률중에서 특별히 세법문제를 홍보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 사회: 여성에게 불합리하게 법을 제정했을 당시에 여성이 몇명이라도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남성위주의, 남성편의의 법제정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담희의 처음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존재해도 실제 법을 적용하는데 여성의 의식이 있어야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여성이 의식화되어도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니 결국은 두가지가 다 맞물려야 되겠습니다.

■ 李慶子: 여협에 바라는 것은 '91년도 중점사업으로 세법개정 등 여성에게 불리한 몇가지 주요 사항을 우선 순위별로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 여론화시켜 고치도록 유도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직분의를 갖고 남성과 똑같이 경쟁해서 능력을 개발하여 여성이 강인하고 공정한 능력의 평가를 받도록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李慶子: 임금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세법에서도 남성에게

더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성의 근로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갖춰지면 자연히 평등한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임금을 남성과 동등하게 해달라는 임금투쟁에서는 남성들의 상대적인 피해의식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金慶子: 임금을 처음 결정할 때 남자는 생계책임자로 하고 여성은 단신노동자로 한 것이므로 여성의 임금은 일에 대한 댓가가 아닌, 근본적으로 잘못 정립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재정관으로 동일 임금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경제정책상 다른 분야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어 실행치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체계적, 합리적으로 운동을 벌이다가 안되는 경우 법적으로 판례를 남기기 바랍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꼭 성취되리라 봅니다.

■ 사회: 여성의 취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장내에서의 각종 성차별 철폐, 다양한 타아제도의 정착, 사회복지제도의 확장, 가사노동감소, 자녀양육 책임분담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의 에너지를 어떤 방법으로 건설적으로 유도해낼 수 있느냐도 여성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여성발전 사회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다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특집Ⅱ

국내입양 권장 세미나



특집●

국내입양 권장세미나/기조강연

국내입양의 활성화

1. 머릿말

아동기의 인간은 어떤 포유동물보다도 장기간에 걸쳐 부모나 성인에게 의존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의 따뜻한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할 가정이 없는 아동들이 계속 출현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에게 새롭게 가족관계를 맺게하여 그 가정을 통해서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입양인 것이다.

즉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간에 부모와 자녀의 법적관계를 수립하는 수단"이며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입양관계가 성립될 때에는 생부모가 지닌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고 새로운 부모에게 그 권리와 의무가 법적인 권한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입양은 아동의 권리를 충족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양부모를 설정하여 일정한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수반케 하는 활동인 것이다.

아동복지의 맥락에서 볼 때 입양은 가정 위탁, 시설보호와 같은 가족을



장인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아동복지의 맥락에서 볼 때 입양은 가정 위탁, 시설보호와 같은 가족을 대리하는 서비스들 중에서 최우선적인 것으로 권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입양이 아동의 최적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바람직한 양육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하는 서비스들 중에서 최우선적인 것으로 권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입양이 아동의 최적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바람직한 양육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속담대로 "애비없는 자식", "호로 자식"이란 사회적인 차별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나 또는 아동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이탈시켜서는 안된다는 부모 아동 불가분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한 것이다.

존 볼비라는 학자는 부모슬하에서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으며 양육받지 못한 아동들은 모성결핍증에 걸려서 성장한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기 쉽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입양은 인간본능의 생리적 욕구의 충족과 인격적 요구인 따뜻한 모성애를 충족할 수 있는 경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아 새로운 입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겠다.

2. 입양의 형태와 실상

우선 아동과 양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입양은 양자의 국적이 같은 경우이며 국외입양은 국적이 서로 다른

특집

국내입양 권장세미나/기조강연

경우로서 해외입양이라고도 한다.

국내입양이 이상적인 양육형태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 바이다. 아동에게 동일한 지역적, 문화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더욱이 신체적인 구조나 외모 또는 성격이 유사한 가정환경에서는 특이한 충격이나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부계친족의 범주를 고집하여 핏줄의 양자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오랜 가족문화와 함께 사생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입양제도가 매우 한정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우리 문화에서는 아기가 누구를 낳았는가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혈연성을 관계지으려는 풍토에서 비밀 보장이 어려워 양자들이기를 꺼려하는 면도 없지 않았었다. 그리하여 입양기관으로부터 양자를 구한 즉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웃의 눈치를 살피는 고통의 과정을 겪는 일도 많았다. 즉 우리의 지금까지의 입양형태는 양자를 원하는 부부나 부계친족을 위한 것이었으며 아동의 복지나 행복 및 육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구라과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양은 고아, 사생아, 기아, 손상된 가족의 아이들을 위하여, 혈연적 관계가 어른들의 요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들에게 가정을 제공해주며 사랑을 베풀어 하나의 건전한 인격체를 형성케 한다. 인류애의 발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입양은 아동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서 간주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3. 해외입양의 실제

1950년에 발발한 돌발적인 6. 25동란으로 인하여 대규모로 발생한 혼혈아를 포함한 전쟁고아들과 1960년대 이후에는 미혼모에 의한 사생아 또는 산업화과정에서 빚어진 기아들이 주로 입양대상자가 되어 오고 있다.

신생아나 핏줄의 양자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한국적 상황에서는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이 아동들을 한정된 시설(보육원)만 가지고는 수용할 수 없었으며 입양을 희망하는 수보다 버림받은 아이들의 수가 많아졌을 뿐 아니라 이들 중에서는 연장아동, 장애아동들도 있어서 국내입양은 매우 어려웠다.

아동의 최적인 생존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양육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동복지의 대전제이다. 이 아동들을 위해서는 가정을 제공해 주는 해외로 입양할 수 밖에 없었으며 해외입양 양부모들은 언청이, 정신박약아, 지체부자유아 등 전체 입양 아동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아동들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시대나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해외입양사업이 오늘날과 같이 변화적인 상황에서 계속 지속되어야만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국가나 민족적 차원에서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해외입양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문자답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왜 아동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낯선 땅에 가서 자라야 하는가?

모든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아동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 1항). 이상적인 입양

가정은 가능한 지역적, 종교적, 문화적 경향이 유사한 가정이란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2) 왜 우리의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가?

미혼모아동, 결혼가정아동, 심신장애 아동들의 문제를 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 국가나 민간적 차원의 복지 정책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이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가?

3) 정결한 성도덕 윤리를 기반으로 했던 우리사회의 문화 전통은 사라졌는가? 현재 해외입양대상의 태반은 성의 개방물결로 인한 미혼모아동이다(근 70%).

3) 왜 우리는 "아이를 팔아 먹는다", "한국의 고아들 세계를 표류한다"라는 모욕적인 비난의 기사에 접해야 하는가?

4) 한국전쟁이 끝난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경제발전과 고아수출의 불균형 현상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이와같이 해외입양에서 도출될 수 있는 충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해외입양이 아닌 국내입양으로 돌려야 하겠다.

특히 해외입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종족성(ethnicity)과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 왜 남과 다른가? 하는 등의 회의와 열등감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에 빠지기 쉬우며, 상이한 문화적 충돌이나 충격으로써 문화화 과정에 있어서의 적응에 갈등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들은 주시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모든 혼란이나 충격을 극복하고 잘 적응하는 입양인들도 있

지만 입양의 갈등과 상처를 끝내 해소치 못하고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입양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양부모나 입양될 만한 가정을 구할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아동보호의 최후의 대체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1조(b)항 참조) 즉 앞으로는 국제 조약면에서도 국제입양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권장하며 최후의 대체수단으로서만 고려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4. 국내 입양의 전개

오늘날 우리사회의 급속한 변화나 발전은 입양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조망해 주고 있다. 우리는 최근의 변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국내입양사업의 미래를 전망하며 다음과 같은 제 측면의 요소들을 제기할 수 있겠다.

●외형적 측면에서

1) 경제성장으로 생활의 여유를 찾아 "남의 아이를 내 아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가정의 재정적 안정이 입양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부유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아기가 입양부모에게 짐이 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정도의 수입을 갖고 있어서 아동의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입양을 희망하는 경향이 높아져가고 있다.

2) 아동의 생활의 장이 될 안정되고 깨끗한 주거공간을 가진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즉 좋은 환경을 가진 가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처, 야외활

동의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입양의 의식면에서

1) 종래의 남아선호 경향에서 탈피하여 입양코자 하는 의식의 변화: 남아를 선호하고 일반비밀을 요구하던 의식이 달라져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아를 더 원하는 조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남아 29%, 여아 63%)

2) 과거의 입양동기, 즉 주로 "대를 잇는다"는 혈연중심에서 점차로 가정과 아동을 위해서 입양하고자 하는 의식의 변화: 일부 젊은 층에서는 입양을 비밀로 하지 않고 남의 아기를 내 아기로 키우겠다는 의사들이 표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간운동의 차원에서

일부종교단체들이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우자라는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부 작가나 교사들에 의해서 "사람사는 정을 심는 모임"의 미혼모 돕기운동 등이 싹트고 있어 앞으로의 국내입양의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다음은 본인이 접하고 있는 교회내의 입양사례이다. 두 젊은 부부교사는 여자 어린이를 입양하고 그가 세살이 되는 해에 다시금 남아를 입양하여 잘 키워서 현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다. 처음에는 의아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모습과 양부모의 변함없는 사랑의 실천 등으로 모두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아기없는 가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바 이러한 작은 조직이나 지역사회내에서의 새로운 입양문화의 형성은 해외입양의 부정적 현상을 감소케 할 뿐 아니라 아동복지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

가 될 것이다.

5. 맺는말

한국일보 1990년 11월29일자에 의하면 '고아해외입양 96년부터 중단'이란 기사가 게재되었다. "외무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매년 4천여명에 이르는 해외입양자 수를 오는 '95년까지 매년 10~20%씩 감축시킨 뒤에 '96년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어떤 힘의 논리만으로 결정된 문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준비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이르렀고(올림픽을 치른 나라) 또한 경제·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므로(경제성장국가 10대 중으로 진입)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되는 모든 제체들의 협력에 의해서 바람직한 한국적 입양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입양을 위한 법적 규정이나 조치에 대한 보장, 개인이나 기관별 편의주의에서 벗어난 표준화된 양자의 제도적 장치,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서비스의 구체화, 미혼모아동 출현의 예방적 대책 등 법적, 제도적, 정책적 및 예방적 시책과 아울러 아동중심의 새로운 입양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는 일반시민을 위한 계몽으로 의식의 전환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매우 뜻있는 일로 생각되며 앞으로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아동복지 정책과 입양사업정책 방향

1. 머릿말

6·25동란은 수많은 전쟁 미망인과 전쟁고아를 발생시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사회문제를 안겨 주었으며 그 가운데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제3자의 지원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어린이들의 구호대책은 시급한 과제였다.

당시의 국가재정이나 사회현상은 이들을 위한 적절한 구호나 보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종교단체 등 자선기관이나 국제기구의 구호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으며 외국 후원자와의 결연 등으로 보호를 받아야만 했다. 우리 아동이 문화적·사회적 배경이 다른 외국의 가정에 입양되는 것은 당시의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외국의 후원자와의 입양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외국입양은 그동안 온국민이 힘을 합하여 열심히 땀흘린 보람으로 전쟁의 잿더미를 털어버리고 세계의 대제전인 올림픽을 치루었으며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점에서까지 외국입양이 계속됨에 따라 비난여론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쟁고아가 성장해버린 현재까지 결함가정의 어린이가 외국의 가정에 계속적으로 입양되고 있다는 것은 아동복지정책 측면



김기업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장)

국내입양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아동중심의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겠다.

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깊은 반성과 함께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늘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세미나도 입양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정부의 방향과도 일치함에 따라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아울러 입양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입양사업 추진현황

1. 현황

입양은 민법상의 입양과 입양특별법상의 입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양특별법상의 입양은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으로 나눌 수 있다. 입양사업은 전쟁후인 1952년 10월 보건사회부 훈령준칙에 의해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1961년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아입양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1976년 "입양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입양은 홀트아동복지회 등 4개소의 입양알선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1958~1989년까지 국외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120,421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외입양은 1985년도 한해에 8,847명이 입양된 적도 있으나 그 후 매년 감소되는 경향으로 '89년말에는 4,191명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다. 한편 국내입양사업은 4개소의 입양알선기관과 28개소의 국내입양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89년에도 국내입양기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내입양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2. 문제점

(1) 국내입양

우리 사회는 혈통에 의한 가계계승관습으로 인하여 혈통이 없는 요보호아동을 입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예가 입양을 원하는 가정은 친자입적을 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는 것이다. 또한 입양대상을 선정하는데도 용모는 물론 성별·혈액형·출신성분·연령 등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도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요인을 외에 입양가정은 아동의 육성측면보다는 부부 또는 가족중심으로 입양을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나 가족간의 불화가 발생하였을 때는 입양아동을 일방적으로 폐양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입양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국내입양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내입양알선기관이 절대부족하고 국내입양지정기관은 전문종사자의 부족 등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2) 국외입양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가정

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가족의 사랑과 이해속에서 안전하게 양육되는 것이 최상의 성장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이탈되는 아동이 발생되기 마련이며 이들에게도 가족기능을 갖는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의 양육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외입양은 우리 사회의 가정에서 양육되지 못하고 비록 사회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가정이라 하더라도 가정양육의 기회가 부여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고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국외입양은 재검토되어야 하겠다. 또한 국외입양사업과 관련하여 입양아동 호송인당과 다한 아동의 호송문제와 입양대상 아동확보에 따른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과의 금품수수사태, 그리고 국외입양 아동의 사후관리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III. 입양사업정책 방향

1. 기본방향

아동복지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성장해 나가도록 국가와 사회적인 지원과 조장을 통해서 그 복지를 보장해 나가는 데 있다.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애정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도록 건전가족제도를 발전시키고 사회적·국가적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동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다. 입양사업의 정책방향도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서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첫째, 미혼모·기아발생 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다. 공단지역·접객업소·학생등에 대한 성윤리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건소·가족계획요원 등 일선 보건요원을 활용하여 미혼모 상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둘째, 어린이 찾아주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미아(棄迷我)가 연고자에게 신속히 인계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셋째, 타아제도의 도입으로 가정보호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확대 및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국외입양의 감축과 국내입양의 촉진을 기하기 위해 1989년 9월 입양사업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국내입양 활성화

국내입양은 가정보호서비스의 일환으로 국외입양의 감축과 시설보호 지양으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을 국내 건전가정에서 양육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한 관건으로 입양이 부부나 가족중심의 입양이 아닌 아동중심의 입양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가계계승을 위한 입양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불우한 아동을 인보복지(憐保福祉) 차원에서 건전하게 보호·육성한다는 의미의 입양이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겠다. 우리사회의 오랜 관습을 일시에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으나 사회각계의 꾸준한 관심과 제도·홍보를 통하여 국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식변화를 위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제도적·정책적으로 보완해 추진해나가기 위해 국내입양 활성화 시책으로는 첫째, 국내입양 전문기관의 육성이다. 입양알선기관 이외에 영아시설 등의 사회복지기관을 국내입양 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요원의 배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 불우한 아동을 위탁 보호하여 자연스럽게 국내입양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현재 인천과 광주직할시에 '85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에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

셋째, 양부모 자격기준을 완화 조치한 바 있다. 양부모의 연령이 45세 이상이고 결혼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졌으나 연령을 50세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결혼 후 3년이내라 하더라도 불임의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넷째,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세제·수당 등 혜택의 부여방안 강구로써 현행 소득세법(제61조의 4 제1항 제4호)상 2인이상의 자녀와 입양자(가정위탁보호자 포함)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세 인적공제와 교육비 인적공제를 받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가족수당의 지급, 주택공급우선순위 부여방안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

3. 국외입양의 개선

국외입양은 앞서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비난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장 전면 중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매년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이 1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을 시설보호, 국내입양 등으로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외입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조치 대상인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주력하면서 국내입양 등 가정보호시책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외입양과 관련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개선조치한 바 있다.

첫째, 입양아동은 양부모가 직접 인수하거나 호송인당 2인 이내로 한정

둘째, 병의원·조산소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생아는 반드시 시·군·구 아동보호소 등 행정기관에 신고

셋째, 요보호아동 중 국외입양은 보호소 입소 후 1개월이상 국내입양을 알선한 후 입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매년 10~20%씩 국외입양을 감축하여 '96년도부터는 전면 중단할 방침이며 기존 국외가정에 입양된 아동에게는 모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국방문사업을 추진하고 국적취득과 양육상태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전하게 성장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IV. 맺는말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어린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사

회적, 국가적으로 적절한 보호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입양사업도 불우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에게 가정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특히 국내입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입양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아동중심의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겠다.

앞으로 정부의 아동복지정책도 종래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단순한 보호나 구호적 시책에서 탈피하여 결함가정 등으로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지원서비스와 보호수준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

특집

국내입양 권장세미나/발제강연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모색

1. 서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이러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직장 및 민간단체 등이 개입한다.

아동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아동에 관한 문제나 심리상태를 현상학적으로만 연구하는 순수과학이 아니고 아동의 심리적인 면과 그가 속해 있는 사회조건과의 관계속에서 아동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방법을 찾아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응용 과학이다.

따라서 그 사회 전체 분위기에 걸맞는, 또 그 시대와 맞는 아동복지 정책과 실천이 요망되게 되며 상황변화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

입양이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2. 현대 가정의 특징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가족형태 면에서는 핵가족 형태가 80%로서 단



성영혜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연 우세하다. 이처럼 가족이 구조적으로 변화되어 갈 때에 여기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 혈연가족시대의 권위주의나 남자중심 사상을 버리고 합리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의식을 형성해야 가정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연 우리의 가정이 구조적인 면에서의 변화만큼 의식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뒤따르고 있는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핵가족은 가계의 혈통보다도 근본적으로 부부의 애정이 중심이 되어 결합한 가정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평등주의가 기본원리로서 통용된다. 이것은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확대가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광범위한 친족관계는 유지되지 않고 가정의 지위나 권위도 약화되며, 재산상속, 교육, 진로의 결정 등에서 남녀의 성별 출생순위의 차별들이 없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의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식과 사회 변화 사이에 지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한국 겐립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을 보면, 자녀를 기르는 의미에서 보더라도 부모 자신의 소망을 추구한 후계자를 갖고 싶어하며(한국 32%, 프·미·영 등 10% 내외), 가문의 대를 잇기를 원하고(한국 68%, 다른 나라는 20% 내외),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비율도 높다(한국 46%, 미·영·프 등 10%미만) 부모의식 면에서는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렇다고 했을 때 아동양육 및 입양이 아동중심으로 되기 보다 부모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게 된다.

3. 국내입양 실태와 입양부모의 의식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제사상속 사상에서 나온 가계계승 등의 목적으로 입양이 있어왔다. 입양의 목적이 현대적 아동관과 다르기는해도 외국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 긍정적인 입양태도를 우리는 가져왔다. 다만 강한 유교주의적 가족주의 의식 때문에 아동이 개인으로 취급되지 못한 상황에서 입양이 진행되어왔다. 이는 사실 입양아동 뿐만 아니라 본래의 아동(친자)이나 부인(여성)도 마찬가지로 개인으로 대우받지 못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남편(가장)을 포함한 가족원 모두가 개별화되지 못한, 그리하여 현대의 중심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도덕적 개인주의와는 상치되어왔다. 그러나 내 가족집단만을 생각하는 의식으로서의 현대 사회의 더 큰 공동체 차원에서의 협력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현실적 측면에서는 부모·아동간의 관계에서 빠른 전환이 요구되게 된다.

국내 입양부모들의 입양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조사들(김근조, 1987; 김학주, 1987 등)은 분석하고 있다. 변화되지 않은 부분으로는 같은 성, 같은 혈액형의 아이를 원하고 비밀보장과 친자로 입적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이며, 변화되고 있는 부분으로는 입양동기와 남아 선호에서 여아도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적·소극적 변화만으로는 절 좋은 국내입양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내 아이라고 하는 관념에서부터 사회적인 아이라고 하는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노후생활 대책에 관한 보장제도 등이 따르지 않는 한 국내 입양의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물리적이고

보상적인 방법에 의해 무리하게 국내 입양을 시키기만 한다면 당장 입양은 가능할 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보다는 문제를 눈앞에 보이지 않게 덮어두기만 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국내입양의 문제점

국내입양이 어려운 것은, 한 조사에 의하면 입양부모들이 정상아동 중 1개월 미만 아동을 85.6%, 3개월 미만 아동을 94.5%가 원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연장아, 장애아에 대한 입양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물론 기·미아에 대해서도 요보호아동을 줄이는 방안으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예방사업이 체계적·조직적·계획적·전문적 수준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요보호아동이 어느 한 개인의 문제에서만 비롯된 것이라는 관념에서부터 사회적인 문제에서 출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입양정책 한가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아동복지 정책 내지 가족복지정책 차원에서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통합적이고 정상적인 아동·가족복지정책이 나와 입양아동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복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5. 제언

입양의 성공은 입양보낸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낸 후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또는 아동, 부모 다 만족스럽게 적응하고 있는지가 입양사업의 성공도를 나타낸다. 성공

적인 입양조건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동기를 가족중심에서 아동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문제, 요보호아동의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한 교육·계몽이 전문적·조직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복지 전문위원회와 아동복지기관(입양기관)의 전문가들이 같이 연구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관의 전문가들에게 재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정부의 지원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입양태도를 강구하지 않고 실천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셋째, 입양을 비밀리에 하고 싶은 입양부모들일지라도 이들 양부모들이 사후 같이 만나 같은 문제·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입양부모 집단모임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중에 아동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했을 때 혹시 한번쯤 다른 생각(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일거야)이 들지도 모를때 입양부모 집단모임은 좋은 상담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입양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 가정위탁양육을 적극 권장하도록 역시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며 위탁가정에 대해서는 양육비, 교육비, 각종 세제상의 혜택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렇게 할 때 사회적인 아이로 인정한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입양조건을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모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보장책이 마련된다면 입양도 훨씬 원활해질 것이다. ♣

특집

국내입양 권장세미나/발제강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입양

어린이의 권리장전 또는 마그나 카르타 등으로 묘사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40개국의 비준을 얻었으므로 1990년 9월2일을 기해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했다. 이는 19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협약으로 채택된 지 단 9개월 만으로서 어느 국제인권조약보다도 빠르게 국제법이 된 예이다.

"인류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전문과 10개 원칙으로 된 어린이 권리선언을 유엔총회가 채택한 것은 31년전인 1959년 11월20일이었다. 1948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선언은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아동의 권리수호를 위한 도덕적인 틀이 되어오고 아동복지의 행동지침이 되어왔다. 그러나 선언만으로는 개인이나 사회 또는 정부가 법적책임이나 의무를 가지기에는 부족함을 인식,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세계아동의 해인 1979년 다른 많은 협약에 흠어져 있는 아동을 위한 혜택 및 보호규정들을 포괄적인 규약으로 한데 묶어 초안으로 만들고 10년동안 다듬은 끝에 아동의 권리선언 30주년이 되는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국제협약으로서 만



박동은 (주한 유네스코 대표/담당관)

아동의 권리를 지켜줄 책임은 일차적으로 각 가정, 그리고 사회와 정부에 있다고 하겠다. 물론 협약의 내용에 위배되는 법률은 현재 어느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국제협약은 이러한 법률들을 보다 진보적으로 향상시키고 활성화하려는데 있으며 매일 전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아동에 대한 무관심, 착취, 학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규범을 정하자는 데 있다.

장일치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국제적으로 아동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1억이 넘는 어린이가 집이 없이 거리에서 살고 있으며, 1억이상의 어린이가 기초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이중 60%는 여자어린이). 그리고 5세 이하의 어린이 약 1억5천만명이 최빈곤상태에서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데 이중 매년 1400만명의 어린이가 죽고 있다.

그러나 이 국제협약의 원리를 각국 정부가 국내법으로 전환시키고 실천하지 않는 한,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지원의 배분을 재고려하지 않는 한, 국제협약 자체만으로 이 수역에 달하는 세계어린이들의 심각한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다. 아동의 권리를 지켜줄 책임은 일차적으로 각 가정, 그리고 사회와 정부에 있다고 하겠다. 물론 협약의 내용에 위배되는 법률은 현재 어느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국제협약은 이러한 법률들을 보다 진보적으로 향상시키고 활성화하려는데 있으며 매일 전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아동에 대한 무관심, 착취, 학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규범을 정하자는 데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

특집

국내입양 권장세미나/발제강연

한 국제협약의 업적은 아동의 문제를 국가적, 국제적 의제의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려 놓은 것이다.

아동이 권리를 갖는다고 선포된 지 30년, 이제 아동의 권리는 국제법으로 확정되었으며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각 정부의 비준과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가 뒤따라야 한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그 나라의 법률이 협약의 규범에 따르도록 해야하며 정부는 사설단체나 개인에게 협약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각 분야에서는 국가기관들의 협약준수를 법률에 호소할 수 있다.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60개국을 넘고 있다. 한국도 지난 9월25일 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비준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54개 조항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크게 세분하면 다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아동에게는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인간적·물질적 지원을 제공받고 또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즉, 아동에게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보건과 영양을 공급받고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여가 및 놀이를 즐길 권리가 있다. 지체부자유나 고아도 예외없이 이 권리를 누리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아동은 모든 유해한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부모로부터 격리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이나 상업적, 성적 착취, 육체적, 정신적 학대와 방임,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세째, 어린이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아동은 성장과 더불어 책임있는 성년기에 대한 준비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더욱 많이 가져야 한다.

국제협약과 입양

입양은 부모없는 많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대개 어느 나라의 고아가 되었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적절한 가정에서 입양시키기 위한 법이나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시설이나 기관에서의 보호를 더 우선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빈곤한 환경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을 갖춘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면밀한 심사, 올바른 행정적 절차, 법적 자문이 없는 가운데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입양은 어린이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입양이라는 이름아래 착취와 학대와 노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다른 나라로 보내지는 경우 사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여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할 방법이 없다. 국제협약(20조,

21조, 35조)은 바로 입양기관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타국으로의 입양시 엄격한 조건을 붙여 입양기관이 부적합한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 21조에는 아동의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국내에서 적당한 가정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타국으로의 입양을 인정하도록 되어있다. 즉, 국외입양은 그 사회에서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자원과 수단이 고갈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또는 채택한 국가는 아동에 대한 최선의 생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a) 아동의 입양은 관계법과 절차에 따라서 또한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의 기초하에, 입양은 아동의 지위가 부모, 친척, 그리고 법적 대리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한 필요하다면 위의 관련자들이 충분한 상담과 자문을 받은 후에 입양에 대해 의식적인 동의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보장해야 하며,

(b) 국제입양은 아동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양부모나 입양될 만한 가정을 구할 수 없고 보호될 수 있는 어떠한 알맞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아동 보호의 최후의 대체수단으로써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c) 입양된 아동은 외국에서도 국내입양의 경우에 요구되는 보호 기준, 규

칙과 동일한 조건을 향유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며,

(d) 국제 입양에 있어서는 그 입양알선으로 인해 관련자에게 정당치 못한 금전적인 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e) 가능하다면 양국간 또는 다국간의 합의나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 조항의 의의를 신장시키고 이러한 기초 아래서 외국으로의 입양 알선은 전문기관이나 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1항. 국가는 관계되는 국제 법규, 국내법과 절차에 의거하여 난민자격을 원하거나 또는 이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은 그 부모 또는 제3자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본 협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국가가 참가하여 정한 국제간 인권 협약이나 인도적 기구 안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인 원조를 받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항.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는 적절한 판단하에 그러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하여, 그리고 난민 아동의 가족과의 재결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서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들을 찾기 위하여 유엔과 전문적인 정부기관, 또는 유엔과 협력하고 있는 비정부 기관에 의한 어떠한 노력에도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어

떤 이유에서든 간에 아동이 가족으로 부터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이탈되면 받게 되는 보호를 그 아동도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

제35조

국가는 어떤 목적이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아동의 유괴나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혹은 양국간, 다국간에 적절한 방안을 취해야 한다. ♣



소외되고 버려진 어린 생명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가정」

1. 국내입양의 목적

입양이란 출생에 의해 육체적으로 부모 자녀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법에 의하여 부모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요보호 아동이 있을 때 국가와 사회는 적절한 아동복지 대책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동일한 문화권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줌이 국내입양의 목적이다. 입양에 따르는 구성요소를 친부모, 요보호아동, 양부모로 볼 때 전문입양기관과 사회사업가의 역할이 입양의 성패를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2. 국내입양의 현황

6·25이후 급격히 늘어난 전쟁 고아를 위한 대책으로서 제1단계(1954~1961)로 보건사회부 훈령준칙 4장에 의해 기관입양이 행하여졌고 제2단계(1962~1969)로 혼혈아 해외입양 뿐 아니라 순수한 한국인 고아들에 대한 국내입양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당시 무자녀 가정을 조사하여 입양을 권유하였고 2급 이상의 자녀가 없는 공무원들에게도 아동의 나이에 관계없이 입양을 시켰다. 제3단계(1970~



이지숙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부장)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요보호 아동을 우리의 손으로 거두어야 한다는 국민의 자각이 생겨나고 국가정책이 강화되어도 변화의 당연성만 부르짖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국내입양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보완되면서 질적 양적 활성화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아동복지측면에서 국내입양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다.

1976)까지 고아입양 특별법과 아동복지에 의한 입양이 계속되었으며 일반인들의 입양에 대한 태도도 종래와 달리 건전한 방향으로 자리잡히기 시작했으며 부모에게 맞는 아동을 찾는 것보다 아동에게 적당한 부모를 찾기 위해 입양대상아동을 선정하거나 입양가정을 조사하는 전문입양기관 사회사업가들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제4단계(1976년 이후 현재까지)는 입양특별법 및 입양특별법 시행령과 입양특별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입양전문기관으로 허가된 4개 국내의 입양알선기관(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한국사회복지회) 외에 전국 28개 국내입양 알선 지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국내입양의 절차 및 조건

양부모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양부모 연령은 25세~50세, 결혼기간은 3년이상,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인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아동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건전하게 보호양육시킬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알아본다. 이때 구비서류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부부의 건강진단서 각 1통이 준

비되어야 한다.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는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마친 후 결격사항이 없을 때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담당 상담원은 입양신청가정을 방문하여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입양이 이루어지게 된다. 소요기간은 일정하지 않다.

4. 국내입양의 문제점

첫째, 법적보장이 미흡한 것이다. 현행 입양특별법에서는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여야만 양부모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지고 있어 90%가 비밀 보장을 원하는 양부모의 입양에서는 입양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입양방법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념과 인식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인데 국내입양에 대한 홍보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사실을 주위에 비밀로 하고 싶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된 사회고정관념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근거가 되며 국내입양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양부모의 자세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선별적이다(즉 입양아동의 배경, 연령, 성별, 혈액형 등).

네째, 요보호아동 발생율도 많으나 국내입양으로 선별되어 가는 아동은 적기 때문에 자연히 국내입양에서 제외되는 아동은 진정한 의미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입양을 원하는 국외입양 가정으로 입양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되어야 할 점이다.

다섯째,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내입양사업이 기관을 통해 시작된 지도 40년이 지나고 그 수도 대단히 많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통계나 입양의 성공여부에 관한 사후관리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것 또한 앞으로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5.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첫째,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적 이해 및 차원높은 홍보활동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입양전문 기관의 평준화 및 업무수행상 활성화를 위한 협조결여를 들 수 있다.

셋째, 입양관계 정비 법규(입양특별법상)가 필요하다.

네째, 불법적인 개인입양을 규제하고 전문 입양기관을 활성화시켜 정착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시급하다.

다섯째, 전문 입양기관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운영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국내입양 발전의 저해요소이다.

6. 맺음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이해와 참여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요보호 아동을 우리의 손으로 거두어야 한다는 국민의 자각이 생겨나고 국가정책이 강화되어도 변화의 당연성만 부르짖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국내입양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보완되면서 질적 양적 활성화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아동복지측면에서 국내입양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다. 또한 이웃 사랑은 복지사회를 엮는 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사회에서도 늘 자신을 갖고 산다는 것을 알고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소외되고 버려진 어린 생명들에게 바로 당신의 「따뜻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국내입양에 관한 법적 고찰

1. 서설

최근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정도에 이르고, 이를 국내적으로 해결하자는 반성의 소리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원래, 혈통을 승계한다는가 또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위하여라는가 하는 이유에서 발달되었는데 이는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의 모습이고, 오늘날에는 양자제도의 목적이 변화되어 양친의 자식 욕이나 경제적 원조를 받으려는 「아버이를 위한 양자」가 요구되기도 하며 근래에 와서 대두된 것은 고아나 사생아 등 양육할 사람이 없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한 즉 「자(子)를 위한 양자」의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자(子)를 위한 양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아직도 「가(家)를 위한 양자」 또는 「아버이를 위한 양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바로 이 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고아나 사생아를 국내에 입양시키기 어렵고 외국으로 결국은 입양시키게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 구 민법은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를 채택하여 입양의 조건으로서 양친은 기혼남자에 한하고 양자는 양



최금숙 (이화여대 법학과 조교수)

「자(子)를 위한 양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아직도 「가(家)를 위한 양자」 또는 「아버이를 위한 양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바로 이 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고아나 사생아를 국내에 입양시키기 어렵고 외국으로 결국은 입양시키게 된다고 생각한다.

부와 동성동본이어야 하며, 양자는 남자이며 한 명에 한하였고,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입양을 금지하였으며, 사후양자와 유언양자를 인정하였다. 이 같은 법제도하에서 고아나 사생아를 입양하는 데에는 제도적 장애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후 현행 민법(1960년 1월 1일 시행)상 양자제도는 많은 변화를 수용하며, 미혼자나 여자도 양친이 될 수 있으며, 자녀가 없는 자만이 양친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입양에 있어서 호주의 동의를 요하지도 않으며, 이성양자도 가능하게 되었다(다만 호주상속을 하는 양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이어야 하였다. 최근 개정되었음). 그러나 그 외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법상 양자제도는 「가(家)를 위한 양자」, 「아버이를 위한 양자」의 모습을 버린 것은 아니나, 「자(子)를 위한 양자」로 될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았다고 하겠다. 더구나 1989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민법중 일부(시행법) 개정에서의 입양에 관한 개정의 특징은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즉 사후양자제도, 서(婿)양자제도 및 유언양자제도를 폐지하고(개정민법 제867조, 제876조, 제880조), 호주의 직계비속장 남자는

입양이 금지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개정민법 제875조). 개정법은 「자(子)를 위한 양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하여 후견인이 동의함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개정민법 제871조 단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개정민법 제872조).

또한 고아나 사생아 등에 대한 입양 촉진과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 특별법(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77호)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목적은 동법 제1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

는데, 즉 「이 법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II. 입양의 요건

입양의 요건에 대한 규정은 민법과 입양특별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에 앞서서 먼저 근대양자법의 모범이라고 일컬어지는 1926년의 영국양자법(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양자법)의 특색을 보면, 첫째, 양자로 되는 자는 미성년자에 한한다는 점, 둘째,

입양의 성립 여부는 자(子)의 복리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는 점, 셋째, 입양이 성립된 효과로서 양자와 생부모 및 실친족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양자는 양친의 직출자로 된다는 점이다. 이 기본원칙은 1975년의 개정에서도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것과 우리나라의 양자법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근대적 양자법에는 미치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즉 위의 첫째 점을 살펴보면 우리 민법은 양자될 자를 미성년에 한하지 않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고, 이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가(家) 또는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 및 「아버이를 위한 양자제도」에서 벗어나서 「자(子)를 위한 양자제도」로의 제도적 개혁과 아울러 실제 사회에서도 가부장적 사고 및 혈통존중의 사상에서 탈피하여야만 외국입양문제로 받게되는 비난을 면하고, 국내입양이 활발해지리라 생각한다.



를 위한 양자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입양특례법이 근대적 사상을 수용하여 제2조에서 「양자가 될 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둘째점을 비교해 보면, 영국은 법원선언형인데 반하여 우리는 양친과 양자(개정민법 제869조에 의하면 15세 미만인 양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락을 하게 된다)간의 입양에 관한 합의로 입양이 성립하는 계약형이다. 법원선언형의 장점은 입양을 선언하기 전에 양친이 입양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조사되어 자(子)의 복리가 고려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민법 및 입양특례법은 계약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子)의 복리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므로 학자들은 법원선언형의 도입을 많이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를 채택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자(子)의 복리를 고려한다는 점은 민법보다는 입양특례법이 좀 더 배려를 하고 있어서, 제3조에서 양친이 될 자격에 관하여 「1. 양친이 될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 것 2.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3. 양자를 부업(職業)·고역 기타 인권유린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은 입양알선기관이 관여된 경우에 이 기관이 양친의 가정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입

양특례법 제11조). 이와 같은 전문가에 의한 조사 등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III. 입양의 효과

우리 민법상 양자는 입양신고를 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878조 제772조 제1항). 이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우리의 경우는 입양이 있는 후에도 생부모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됨으로써 양친자관계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위에서 살펴본 영국양자법의 세번째 특색은 양자와 생부모관계가 단절된다(예외적으로 근친혼, 근친상간죄, 사회보호법상의 수당 등에서는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양자제도를 채택한 것이고, 이는 영국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일본, 동도 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양자의 성에 관한 문제는 민법은 이성양자제도를 도입하고도 양자의 성의 변경에 관하여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입양특례법에서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하고 있다(입양특례법 제7조). 또한 양자는 혼인중의 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상속 및 부양 등에 있어서 친생자와 동일하다.

IV. 결어

이상 국내입양의 추진을 위한 법적 문제를 몇가지 고찰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 및 「어버이를 위한 양자제도」에서 벗어나서 「자(子)를 위한 양자제도」로의 제도적 개혁과 아울러, 실제 사회에서도 가부장적 사고 및 혈통존중의 사상에서 탈피하여야만 외국입양문제로 받게되는 비난을 면하고, 국내입양이 활발해지리라 생각한다.

입양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해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입양에 있어서 자(子)의 동의도 고려하여야 하고, 익명입양제라든가, 시험양육제도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완전양자제를 도입할 때에는 양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자기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도도 배려해야 할 것이며, 입양까지 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양호(養護) 결정을 통하여 고아나 사생아의 양육 등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

특집

국내입양 권장세미나/발제강연

잠시 행복을 맛본 후 영원한 방랑자로 남게되는 해외입양아

먼저 저희 MBC에서 방영되었던 테마 기획시리즈 제1편 '해외입양아'를 취재하기로 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취재관계로 유럽에 갔다는 동료프로듀서가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또 교민들로부터 이야기들은 바로 한국에서 온 입양아들이 그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교민사회에서는 창피한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작 입양을 해 간 그 나라 국민들의 눈에도 한국이 고아를 팔아먹는 나라로서 좋지않게 비쳐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아이를 입양해 간 독일의 어느 양부모는 자신이 쓴 "코리아에서 온 작은 동생-윙"이라는 책을 통해 한국의 해외입양정책을 신랄히 비판했으며,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Progressive」에서는 "한국은 아이를 수출한다"는 식으로 경제성장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해외입양정책을 비꼬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많은 수의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취재하기로 한 저희 취재진은 현재 우리 입양아들이 많이



김시리 (MBC TV 교양제작1부 PD)

양부모의 대부분은 아이를 키우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장래에 무슨 기대를 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이를 키우는 재미로 키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한 수단으로써 입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 있는 미국과 서독,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 북유럽국가들을 다녀보기로 하고 입양되어 가는 아이들과 동행취재형식으로 우선 당시 한해 6천명 정도가 입양되고 있다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백인아동들의 절대부족으로 유색인종의 아이라도 데려다 기르기를 갈망하는 미국의 양부모들에게 끌리핀, 인도 등 동남아제국과 남미제국 등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한국아들과 함께 공급되고 있었는데, 전체숫자의 절반을 한국아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명의 입양아동과 함께 미네아폴리스 공항에 도착한 취재진은 뜻밖의 광경에 잠시 사고의 혼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양부모와 친척 등 온가족이 동원되다시피하여 열렬히 환영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갔던 5명의 어린이 중 3명은 선천적인 장애아였는데, 그들을 포옹하는 양부모들의 표정은 진실되게 보였으며 애정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중 한명은 8살로서, 국내입양되었다가 집안 일을 밖에 나가서 합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특집

국내입양 권장세미나/발제강연

과양된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미국의 가정에서 입양된 후 일주일만에 취재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우리말을 못알아 듣는 듯이 행동했으며 그동안 친숙하게 지냈던 저희에게 냉담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부정적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후 며칠동안 우리 입양아들이 살고 있는 몇몇 가정을 방문해 보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양부모로부터 미 국민행제들과 똑같은 사랑을 받으며,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아이에 대한 사랑 내지는 인권존중 의식은 본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제입양아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아의 경우, 미국인 양부모들은 아들로 하여금 수술을 받게하고, 또 최선의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양부모가 딸벌이라는 그리 넉넉지 못한 어느 가정에서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6명은 한국에서 입양해 온 아이들이었으며, 또 이들중 4명은 각종 신체장애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상아인 친자식들과 다름없는 사랑을 받고 있었으며, 양모는 지체부자유인 양아들의 대소변 시중을 해가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의 입양기관에 또 한명의 아이를 신청해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만약 이 아이들이 한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양모에게 이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묻자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키우고 싶어서 키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해외입양 문제의 모든 해답을 여기서 얻었습니다.

다.

그들 대부분은 아이를 키우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장래에 무슨 기대를 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이를 키우는 재미로 키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한 수단으로써 입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다 자란 18세가 되면 더 이상 양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 되고나면 그 이후의 인생은 자기 혼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구미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해외에 입양되는 한국아이들의 문제는 자라는 기간 동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춘기 때, '나는 왜 이곳 사람들과 피부색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를까?' 또는 '나는 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조국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을까?'라는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인해 성격이 비뚤어져서 가출을 하는 등 잘못된 경우도 더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자란 경우에도 18세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 부딪쳐야 하는 벽은 두꺼운 것이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우선 인종차별을 받아야하고, 특히 유럽의 경우가 심합니다만,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국인의 심성이 남아있는 이들에게 이웃과의 적응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예를 스웨덴의 한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26세의 수잔·브랑크라는 이 여인은 세살 때 입양되어 왔는데 양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라면서 많이 맞았으며 내살 때인가, 양모가 흘려보내는 눈길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세가 되던 해 어떤 스웨덴 남자를 알게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쫓겨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양부모가 그녀를 만나주지도 않고 아예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려서 지금은 연락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있는 나라여서 의식주에 큰 불편은 없었으나 7살 된 노랑머리의 딸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웃과의 관계도 순조롭지가 않았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인의 심성을 간직하고 있는 그녀는 스웨덴인들과 잘 어울려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양철학인 선을 공부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방은 일본의 도자기 인형, 부채 등 동양적인 소품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제품이 없어서 일본 것을 사 놓았다고 했는데, 한국문화를 모르는 그녀에게는 아마 한국 것이나 일본 것이나 같은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포에게서 배웠다고 하며 생배추에다 고추가루만 섞은 맛있는 김치를 고국에서 온 취재진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녀를 보며 저는 '국제미아'란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고아의 신세였지만 정신적으로 identity가 없는데서 오는 외로움은 국내의 고아들과는 다른 차원의 것일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각국의 입양아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이 아이들이 조국에 의해 또 다시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행복이라는 명분하에 바다 건너 이역만리로 내보내진 이 아이들은 잠시 행복을 맛본 후 영원한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이를 버리는 셈이 된다면 제가 낳은 아이를



버리는 몫을 부모와 국가가 다들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국제적인 체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는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에 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대책은 '아이의 행복'이라는 입장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목표를 세워놓고 숫자맞추기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지난 75년의 피어슨영아원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내입양이 늘지않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해외입양 금지조치로 인해 시설기준에 넘치는 아이들을 수용함으로써 전염병이 돌아 어린 생명들이 폐죽음을 당한 이 사건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온 당국의 96년도 이후 해외입양 전면금지 대책 가운데 국내입양 조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대목은 또 다른 불행하기를 바라는 가능성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의 입양기준으로도 파악사제가 허다

이번에 나온 당국의 96년도 이후 해외입양 전면금지 대책 가운데 국내입양 조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대목은 또 다른 불행하기를 바라는 가능성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의 입양기준으로도 파악사제가 허다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결코 아이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목표달성이라는 양적인 면만을 증시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임기응변식의 출출정책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뿌리깊은 친자 선호의식의 불식과 인도의 정신의 함양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해외입양 감소정책과 동시에 국내입양 능력화대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함으로써 해외입양이 스스로 줄어들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기왕에 나가있는 입양아들에 대한 보호 및 교육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 우리의 아이들이 노랑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국제미아가 되어, 조국을 저주하며 영원히 방랑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종합토론

사회: 지금까지 해외입양의 문제점과 국내입양의 어려운 점을 여러가지로 파악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시리 PD에서는 '96년부터 해외입양을 전면 중단하고 국내입양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발표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입양의 숫자를 무리하게 줄이려고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보사부의 주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업 국장: 해외입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입양의 원칙적인 요인인 요보호 아동 발생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보호 아동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입양이 늘고 요보호 아동의 수가 적으면 입양은 줄기 때문에 예방적 대책으로 요보호 아동의 수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요보호 아동이 발생되는 원인 중 미혼모의 사생아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혼모를



사회: 김상균 교수

해외입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입양의 원칙적인 요인인 요보호 아동 발생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보호 아동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입양이 늘고 요보호 아동의 수가 적으면 입양은 줄기 때문에 예방적 대책으로 요보호 아동의 수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줄이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산업체근로자 및 집객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문교부와 노동부, 대한가족협회 등에서도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인 대책으로는 전국에 있는 100여개의 상담소에서 미혼모들이 권리포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96년도까지 해외입양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는 더 이상 해외입양을 보낼 수 없다는 인식만으로 계획된 정책은 아닙니다. 사실은 '95년도 안으로 해외입양중단이 가능하다는 예측하에 추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국내입양을 하고 국내입양이 안되는 아동은 시설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해외입양중단에 무리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회: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해외입양의 수를 줄이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국내입양의 활성화보다는 근원적인 요인인 요보호 아동의 수를 줄여가는데 주력한다는 것이군요.

국장님이 제시한 정책 중에는 국내입양 가정의 세계협력이나 수당지급에 대한 고려, 가정 위탁보호사업의 확대

입양 전문기관의 육성 등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7차 5개년 경제계획을 세우는 시점입니다. 혹시 제7차 5개년 계획에 이런 정책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금숙 교수님께서 법개정에 대한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개정을 할 수 없었던 장애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금숙 교수: 법체계에서 남녀평등의 문제가 80년대의 관심사였다면 자(子)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대두된 관심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子)의 문제는 입양뿐 아니라 친권·후견인 등의 여러 방면에 걸쳐 연구분야로 남아있습니다.

법체계에서 구체적인 동향은 가족법에서 자(子)의 복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협의이혼시에는 이혼당사자 뿐 아니라 자(子)의 복리도 고려를 하자는 것이지요.

따라서 법개정을 하기 위한 장애요인이 있었다기 보다는 최근에 관심을 가진 분야라 개정논의도 이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회: 그러면 새로운 개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의식개선을 위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이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확산되기 위한 방법으로 흔히 제시되는 것이 언론매체라고 봅니다.

현재 언론에 몸담고 계신 김시리 PD에서 나오셨는데요. 지난번 해외입양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국민들에게 해외입양의 문제점을 잘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언론매

체의 역할면에서 볼 때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시리 PD: 현실적으로 언론매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이라기 보다는 일반인의 상식보다 먼저 느끼고 좀더 연구하여 발표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연구해서 나오지 않는 전문적 대책을 저희가 언론에 발표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언론은 해외입양의 문제점을 국민모두에게 널리 알리려 노력하리니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해외입양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언론매체의 기여는 인정합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국내 입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입양에는 다른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지식과 기술면에서 know-how를 축적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내입양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지숙 부장: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는 해외입양기관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실은 국내에도 현재까지 11,300명 정도의 고아를 입양시켰습니다. 그러면 왜 국내입양은 되고있지 않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지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입양특별법의 시행규칙을 보면 '비밀보장'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입양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를 그만둔

후에도 근무기간의 취득사실에 대해서는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저는 24년간을 국내입양일을 하면서도 아직도 국내입양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아동들이 국내에서 잘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라는 이유로 홍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보장이라는 문제 하나만으로도 국내입양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에 따라 입양아는 친자로 입적되고 호적에 자식으로 인지된 후에는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 국내입양이 쉽다는 말은 제가 처음으로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3000명 정도가 해외로 입양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해외입양을 당장 중단하더라도 국내입양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지숙: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보호아동이 발생할 때 그중 43%가 28가지로 분류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아들입니다. 이들은 환경의 오염이나 공해 뿐 아니라 산전·산후 기간에 불충분한 지식이나 보호의 결핍 등으로 태어난 영아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은 잘 생기고, 자신의 혈액형과 생김새까지 닮은 아동을 원하고 있으니 이런 장애아들은 해외입양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의식이 개선되어 장애아들도 국내에서 수용하여 한 명도 해외로 입양을 보내지 않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특집

국내입양 권장세미나/종합토론

사회: 참석자 여러분들중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 입양의 실태를 보면 국내의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은 7~8개월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외입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식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입양 부모들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식이라는 것이 한 두해에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변화되기만을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도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국내입양의 비밀보장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보호기관보다 위탁가정에서의 양육이 바람직하므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자는 것입니다. 즉 의식의 전환을 기다리지만 말고 제도 자체의 변화를 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네, 말씀 감사합니다.

청중: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자신이 하겠다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입양을 안하면서 남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식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실천을 해 봅시다.

사회: 실은 순선수범이라는 태도로 한때 2급 이상 공무원들이 입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떤지 이 기회에 각자 자성의 계기로 삼읍시다. 또 다른 제안이 계신지요.

청중: 저는 국내입양활성화는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단체들이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 홍보를 강화하자는 말씀이신



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지요.

청중: 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은 대개 신생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유보기간에 따라 1년8개월 정도가 소모됩니다. 그러면 국내입양의 가능성이 줄어들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친권자가 아이를 유기한 것이 확실할 때는 법적유보기간을 완화해서 국내입양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 신생아를 입양하기 위한 부모들을 위해 법적인 유보조치를 완화하자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나 그러한 완화조치가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까 우려가 됩니다.

정부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업: 제안하신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사회: 입양자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보호 아동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 미혼모에 의한 출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혼모의 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성명혜: 미혼모 문제는 그냥두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한 강력한 개입과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결국 국내입양의 활성화방안은 국가정책, 법, 사회 구조적 측면 등의 다방면의 접근을 통한 연구·검토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여겨집니다.

끝까지 토론에 참여하시고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종합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여성 원로 초대석 ①

김옥라 선생님

1986년 사단복지법인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를 설립하여 현재 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김옥라 선생님은 초창기 걸스카웃 창업에 동참하여 6.25사변으로 사멸위기에 있던 걸스카웃 운동을 피난지 부산에서 재건하는 등 청소년 지도와 지도자 양성에 노력하였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1969~73)과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여성선교회 회장(1974~82), 세계감리교 여성연합회 세계회장(1981~86)을 지내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국위선양에 공헌하였다.

현재 자원봉사자 양성과 사랑의 공동체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계신 김옥라 선생님을 적산동의 연구회로 찾아뵈었다.



—사재를 들여 설립하신 사단복지법인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저는 일을 좋아하였고 공직의 임기가 끝나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리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1986년 케냐에서 있는 세계감리교 여성선교회 대회를 마치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여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로 마감하리라고 결심하고 그동안 수없이 구상한 꿈들을 실제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숙(熟)”같은 것을 만들어 지방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을 함축시켜 지도자로 길러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모두 장학금으로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은 사회에 진 빚을 갚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 상의를 하였던 대학교수들은 세상이 바뀌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은 우리가 공부하던 1930년대의 젊은

이들의 사고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야 했고 우리는 생각을 더 넓혀서 자원봉사는 장학사업, 청소년 사업 그리고 여성과 저소득층을 위한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자원봉사의 가교역할을 할 자원봉사 센터같은 것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외국을 다니면서 자원봉사가 전반적으로 생활화되어 있고 이미 우리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이웃사촌 정신으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사랑의 공동체 건설'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일은 임의단체로도 운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난 후라도 영구적으로 단체가 잘 운영되도록 경제적 자립기반을 만들고자 법인체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연구회는 설립 이래 약 6백명의 자원봉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그들을 장애인 시설, 병원봉사, 비행청소년 선도, 노인봉사 등에 연결,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에 가까운 무의탁 환자들을 희생적으로 보살피는 사랑의 자원봉사자들을 계속 길러내고 있습니다.

— 학교를 졸업한 뒤 어떤 계기로 사회활동을 시작하셨습니까?

■ 일제시대에 태어났고 대학(일본 동지사 여자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38선이 생기고 이북이 고향인 저는 남쪽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미군정청에 취직하여 있는데 군정청내에 걸스카웃 운동체가 소개되어 들어와 근무 틈틈이 걸스카웃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지난해 2월 걸스카웃에서 은퇴하기까지 45년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 걸스카웃 도입 초창기때의 일과 걸스카웃 운동에 오랜기간을 몸담게 된

연구회는 설립 이래 약 6백명의 자원봉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그들을 장애인 시설, 병원봉사, 비행청소년 선도, 노인봉사 등에 연결,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에 가까운 무의탁 환자들을 희생적으로 보살피는 사랑의 자원봉사자들을 계속 길러내고 있습니다.

계기가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 걸스카웃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것은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 대의 사람들은 걸스카웃이 태동되었을 때 미국의 걸스카웃이 군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보내고 지도자도 선발해 줄 때였습니다.

6.25가 나자 모두에게 생존의 문제가 걸스카웃 활동보다 우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걸스카웃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던 계기가 개성에서 몇명의 걸스카웃 단원이 부모를 떠나 배지를 달고 부산에 내려와 우리들은 그 아이들을 천막에 수용하고 생활하도록 도와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피난민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걸스카웃 운동이 재활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걸스카웃에 빠지게 된 동기는 세계연맹에서 파견되어(1948)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인 미스 마가렛 부이가 지도자 강습을 할 때 제가 그분의 통역을 맡아서 하면서 6개월간 그녀에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였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6.25가 나고 마가렛 부이 여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일

본 부녀자들의 환영속에서 걸스카웃을 보급하여 일본 각 지역에서 걸스카웃이 조직되고 전국대회까지 벌인 것을 상세히 소개하는 안내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일본여성들에게 걸스카웃의 정신은 훌륭한 여성과 훌륭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피난지였던 송도의 술밭에서 그 안내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일제치하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공부하면서도 늘 애국심에 대해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던 것은 훗날 결혼을 하게되면 나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애국심을 가르쳐야 하는가 때문이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을 때 일본에 비해서 열세한 정치, 경제 상황에서 우리의 딸들을 훌륭히 육성하는 것은 주부들이 마음만 합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마저도 일본여자들에게 뒤질 수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스 마가렛 부이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일본여성들처럼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 때 내 작은 힘이지만 걸스카웃을 우리나라에 심는데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45년간 걸스카웃활동을 하니 작년 2월에는 공로패까지 수여해 주었지만 저의 봉사보다는 활동을 통해 여러가지 유용한 지혜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 선생님께서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과 세계감리교여성연합회 세계회장 등 교회활동을 통한 국내외 여성문제에 공헌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을 지낸

때(1969~73)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설기 시작할 때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는데 소위 기생관광의 명목으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여성들이 일본교회여성들과 협력하여 정보교환을 하고 정책적으로 윤락여성을 기생관광의 대상으로 만드는 데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격차로 무작정 상경하는 농촌처녀들이 술집에 팔려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서울역에 완장을 차고 안내자를 배포하여 갈 곳이 없는 시골 처녀들을 상담하고 설득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거나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포주의 손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여성단체가 그렇듯이 예산의 부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미국교회여성연합회 30주년대회에 가서 모금활동을 벌여야 했습니다. 실용적인 미국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생각하다가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로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꽃(여성)들을 도와달라는 내용을 생각해 냈습니다. 1불50센트로 만든 조화 무궁화로 당시 2천불을 모금하여 서울역 앞에서 무작정 상경 여성 돕기운동을 계속 벌일 수 있었습니다.

—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여성이기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 기독교 대한감리교여성선교회 전국연합회회장으로 있을 당시인 1974년 10월 교회총회에서 감리교가 두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총회대표로 여성의 수가 얼마되지 않아 분리를 반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지난해 5월 연대에서 명예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은 부군 고 라익진 회장과 함께

여성의 무능력을 뼈저리게 느끼고 여성들'이라도 중립을 선언하기로 하였고 그 일을 계기로 여성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에서의 여성의 실체를 규명해 보고자 했던 노력이 '남녀관계에 대하여 성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번역서를 내놓기에 이르렀고 결론을 그 책에서도 성서는 창조설화에서부터 남녀를 공평히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후배 여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저는 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명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여성들 외에도 온 국민이 자원봉사 정신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간과 더불어 사는, 사랑의 정신을 갖는다면 우리나라도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중에 보낸 학창시절의 꿈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키는 것이었다는 김옥라선생님은 지난해 제 1회 서울시민대상 본상을 수상하기까지 평생을 청소년, 여성을 위한 봉사로 일관하였고 특히 신앙과 가족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시며 앞으로도 연구회를 통해 '사랑의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대담·정리 정우영)

이달의 여성계동향

90년을 마감하는 12월의 여성계는 말 많았던 「영유아 보육법」이 마침내 탄생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이것은 1년 동안 여성계가 주력해 온 법률제정 작업의 유일한 성과 이기는 했으나, 워낙 관련 집단간에 이해가 첨예하여 통과 직후 반대성명이 이어지는 등 잡음이 계속됐다. 91년 신년을 맞아서도 일본 가이후 수상의 방한을 반대하는 사위가 여성단체를 필두로 전개되기도 했다.

12~1월의 여성계 동향을 정리해 본다.

홍은희 (중앙일보 생활과학부 기자)

「영유아 보육법」 확정

민자당이 제출한 「영유아 보육법」이 지난 12월1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신영순의원 등 23명의 발의로 11월20일 국회에 제출했던 이 법률은 당초 안에서 약간의 수정작업을 거쳐 전문 6장33조와 부칙 7조로 이루어졌다.

쟁점이 됐던 「보호·교육」을 「보육」으로 통일시키고, 관장부서는 보사부로 일원화시켰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보사부령에 따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인가받지 않은 탁아시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 이 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로 보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 법 기준에 따른 시설과 종사자를 갖추도록 했다.

한편, 이 법이 국회 보사위를 통과하자 민중당과 여연산하 탁아특위 등이 반대성명을 내고 입법저지대회를 여는 등 극작적인 반발을 보였으나, 법제정을 막지는 못했다.

영유아보육법은 금년내로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실시될 것으로 보

인다.

「가사노동의 가치와 세법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세법개정운동을 펴고 있는 여성계에 발맞춰, 한국여성민우회는 「가사노동의 가치와 세법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 1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일원에 사는 전업주부 7백3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가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라고 응답했으며, 79.9%가 재산의 41~60%는 자신의 몫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런 의식과는 달리 대부분의 재산은 남편 명의(82.8%)로 돼있었으며, 세금 때문에 공동명의로 부인 명의로 하지 못했다는 이도 27.8%를 차지했다. 부인 몫에 대한 중여세 부과는 86.5%가 매우 부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남편 사망시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73.7%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가사노동의 금전적 가치 평가를 50만원 이상(41.3%)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35~50만원(37.8%)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법 개정의 실효를 위해 세법개정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는 12월에도 국회 재무분과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의회로비활동을 계속했으나, 이혼시 공제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김숙자교수(명지대·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를 주축으로 한 세법개정운동가들은 금년에도 계속적인 활동을 다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성금융인들 임금체계 개선 요구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남녀고용평등의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금융인들의 임금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91년도 국책은행 예산편성 때 특별예산 4%를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현재 고졸 은행원의 초임(6급)은 본봉이 11만5천8백원으로 남자가 같지만 직책수당에서 차이가 나 기준봉급액이 달라지고 있으며, 남녀분리호봉체계로 인해 호봉승급액이 서로 달라 30호봉의 경우 은행원의 기준봉급액은 남행원의 69%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노련은 이같은 남녀분리호봉체계를 단일호봉화하는데 8%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1차적으로 91년도 예산에 4%의 예산을 반영시켜 직책수당부터 남자가 같도록 맞춰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리본페용·단위노

조 여성부장들의 결의대회 등 12월동안 활발한 투쟁을 벌였으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의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됐다.

정무제2장관실, 「북한 여성의 실태」보고서 발간

북한여성들의 생활상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한 연구서가 정무제2장관실에 의해 발간됐다.

정무제2장관실이 한국여성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펴낸 「북한여성의 실태」를 보고서는 의·식·주 생활과 교육·문화활동·가정생활과 정치참여·경제활동 등의 분야로 나누어 정리했다.

연구서에 따르면 북한여성은 23세 정도에 부모·친척·당간부가 주선하는 중매로 결혼하게 되는데 신랑·신부가 동시입장을 하는 것이 우리와 크게 다르다.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는 20%정도의 여성대의원이 있으며 지방인민회의에는 3명중 1명의 여성대의원이 선출될 만큼 여성정치참여율이 급신장되고 있는 추세. 그러나 고위직·핵심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수는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남성정치의 틀러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혼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실태 조사

영세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일부 생산직 기혼여성노동자들은 모성보호를 받기는 커녕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정여인회·노동과 건강연구회 공동으로 안양·안산·성남·인천 등경인

7개지역 기혼여성노동자 1백49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80%가 26~35세의 임기 여성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96%가 1주당 법정근로시간(44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으며 11%는 61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3%가 작업장에 개인의자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먼지(71%) ▲소음(53%) ▲환기(50%) 등으로 인한 작업환경의 불만을 표시했다.

응답자중 56%가 피로·영양부족·심한 육체노동 등으로 불규칙한 생리주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31%가 자연유산 경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경험자 1백37명중 22%가 저체중아 출산·조산·사산·기형아출산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60%는 출산후 1주일정도 휴가를 얻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여성한마음회 창립총회 개최

독신여성들의 모임인 한국여성한마음회(회장 김애순)가 12월15일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했다. 여성신문교육문화원이 마련한 「독신여성을 위한 강좌」수강생을 주축으로 결성된 한마음회는 만20세이상 여성가운데 고졸이상 학력자로 미혼이거나 결혼 경험이 있어도 입회 당시 배우자가 없는 이들로 회원자격을 국한하고 있다.

이회는 월1회 정기모임을 갖고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관심이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매 분기별로 회원들의 정신적 강화를 위해 연수회도 가질 계획. 한마음회는 앞으로 ▲취업희망자와

전직희망자에게 취업정보 및 직장추천 ▲공동구매장과 신용협동조합을 운영, 수익금으로 소년가장 후원 ▲여성 단독세대의 경우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분양시 불이익을 받는 등 독신여성에게 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인신매매추방운동협의회 (가칭) 결성키로

인신매매추방운동협의회(가칭)가 결성된다. 서울YWCA·교화여성연합회·경기기술학교·민주시민운동연합·한국특수선교회·한국청소년상담회·한국심리상담연구원 등 그동안 인신매매고발활동을 벌여온 7개 민간단체들은 12월20일 서울Y에서 간담회를 갖고 인신매매추방운동협의회를 구성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연대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1차 공동작업으로 국면 없는 인신매매신고 전용전화개설을 정부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여성교육의 문 넓어져

올해부터 여성교육의 문이 넓어지게 됐다. 교육법상의 학교가운데 금녀구역으로 남아있던 농협전문대학이 이번 학기부터 여학생에게도 개방되며, 국방부도 95년까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ROTC에도 여성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 입학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전면 철폐됐다. 이번 조치 이전 여성입학불허를 철폐한 곳은 국립세무대학(88년)·국립경찰대학(89년)으로 경찰대학의 경우 지난 12월에 실시된 입학시험에서 여성이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

한복전문가

우리 옷은 우리 생활에 맞게 디자인해야 함은 물론 우리 문화이므로 역사의 흐름, 선조들의 의생활을 잘 연구하여 현재의 의생활에 접목시킴이 가장 쉽고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 옷을 만들기까지

우리 옷 한복을 제작하게 된 것은 12년 전 집안에서 운영하던 직물 공장이 유통과동과 함께 좋지 못한 일로 문을 닫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위로는 시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육

남매의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 당황하기 이를 데 없었다. 건강하고 늙름하던 남편은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니 십여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기만 할 따름이었다. 살 길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른 것이다.

그런 어려운 와중에 나는 쉬운 일,

밀린 안 드는 일, 또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다. 전에 양재를 익힌 적이 있기 때문에 바느질, 재단법은 익히 알고 있었다. 또한 전통적인 집안에서 자라난 덕에 우리 옷에 대한 상식은 몸에 젖어 있었고, 그 일은 나의 적성에도 맞아 곧 차고를 개조하여 작업장을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옷감과 재고 물품들을 하나씩 디자인하여 주변사람들께 보였는데, 뜻밖에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 밤을 새워 일을 하고 틈틈히 복식학을 연구하기 시작하니 나의 적성에도 맞고 점점 나의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끝없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것에 대해 나 자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에 몰두하다보니 잡념은 사라지고 한편 생활의 바탕이 되니 큰 수확이요 보람이었다.

전통과 실용을 접목시킨 우리 옷

우리 옷을 디자인 제작하려면 먼저 옷 입을 사람의 적성을 파악하고 미(美), 바느질의 기교, 색상의 조화, 천부의 맛, 대인관계 등을 잘 파악하

여야 한다. 우리 옷은 우리 생활에 맞게 디자인 해야 함은 물론 우리 문화이므로 역사의 흐름, 선조들의 의생활을 잘 연구하여 현재의 의생활에 접목시킴이 가장 쉽고 현명한 방법이다. 전통을 버리면 뿌리없는 옷이 되고 너무 옛 전통만 고수하여도 입는 장소, 입는 사람의 성향이 변화하므로 장소와 체형에 맞게 재단, 색상, 문양을 조화있게 디자인 해야된다. 옷을 입는 사람의 인격체요, 제2의 피부요, 입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품위있고 고귀하게 제작하여 격을 살리는 것이 디자인 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입는 사람도 역시 우리 옷을 아끼고 사랑하며, 정숙한 몸가짐, 우아한 자태를 가지며, 옷을 입을 때는 속옷을 반듯하게 갖춰입어야만 옷이 더욱 돋보일 수 있다.

우리 옷의 변화라고 한다면 그 성향이 점차 일상복에서 예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르게 옷을 입는 방법은 옷을 입고 가는 장소, 모임의 성격, 본인의 지위 등을 잘 파악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 옷은 역시 우리 체형에 잘 조화되어 있으며 세계 어느 옷보다도 아름답고, 여유롭고, 주위를 압도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의 일, 나의 보람

열심히 작업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십여 년의 세월을 지내다 보니 집안도 안정되고 자식들도 다 자라나 남은 일은 나의 작품생활 뿐인 듯 싶어진다. 눈보라가 치고난 후의 햇빛이 더욱 밝고 찬란하듯이 어려움을 모르고야 세



우리 옷의 변화라고 한다면 그 성향이 점차 일상복에서 예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르게 옷을 입는 방법은 옷을 입고 가는 장소, 모임의 성격, 본인의 지위 등을 잘 파악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상맛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최선을 다하고서야 후회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를 개발하고 나의 발전이 곧 가정과 국가에 기여한다고 생각할 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열심히 살아온 나날을 되돌아 보니 그것이 바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준 근원이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험속에서 커다란 아픔이 내일의 밝음을 예고해 준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고 노력의 결과가 알알이 결실을 이룰 때 하늘에 감사하는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우리 옷 만들기를 통하여 우리 문화의 전수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노년의 보람을 깊고 넓게 느끼고 싶다. ♣

이현정 (한복전문가)



근로여성 고발창구 운영보고서

(1990. 10~12. 31)

근로여성상담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정 내에 서라도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때 그 법이 우리 생활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1. 고발 접수 내용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본회 고발창구에 접수된 내용은 결혼퇴직중용, 직장내폭행, 차별대우,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이다. 이렇게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회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정 내에서라도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때 그 법이 우리 생활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2. 사례 연구

사례 1.

(내용)

× 회사 업무부에 근무하던 이양은 11월에 결혼을 하게 되어 이를 담당부장에게 보고 했더니 부장은 "우리 회사는 결혼한 여자는 다닐 수가 없으니 퇴직준비도 같이 하라"고 사직을 종용하였다.

이에 이양이 계속 근무할 것을 주장하자 부장은 동료직원들로 하여금 이야기 못하게 하고 결혼식날에도 아무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양이 신혼여행후 출근을 하자 그날짜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고 발령후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고 있다.

(문제점)

결혼에 따른 여성의 노동능력 저하 문제는 여성근로자 개인의 노동능력에 따라 구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여성이 결혼을 하면 노동능력이 저하할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 선입견만으로 결혼한 여성을 일률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성근로자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임신·출산을 하게 되고 이 경우 임신·출산에 따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모성보호규정 때문에 모성보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과 더불어 아예 퇴직을 시키는 것이 사용자측의 인사 노무관리상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임신과 출산은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인만큼 근로기준법상 결혼에 따른 퇴직중용을 금하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해서 결혼퇴직제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따라서 결혼퇴직은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금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위반된다.

(조치)

현재 이양은 회사측과 맞서 업무없이 출근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퇴직을 종용할 경우 노동부에 고발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사례 2.

(내용)

× 회사에 근무한지 1년째 되는 한양은 지난 11월 담당과장이 업무상 출장을 같이 가야한다고 하여 동행했다가 과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과장은 한양을 계속 협박하여 몇차례 관계를 가졌고 이로인해 임신하게 되자 유산을 강요하였다. 한양이 유산을 하고나니 과장은 퇴직할

것을 강요하며 퇴직하지 않으면 집과 회사에 알려졌다고 하면서 구타를 하였다.

(문제점)

직장에서 상사에 의한 여직원의 구타나 성폭행은 주로 여직원이 상사의 부장과 실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기 위한 협박이나 유인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점점 늘

어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폭행(강간)이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여성이 창피한 일로 덮어 버리거나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치)

한양은 과장을 폭행죄와 강간죄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유 형	내 용	및 조 치
결혼퇴직중용	10/10. 결혼을 하자 부서가 사직을 권유함 ⇒ 신혼여행 기간동안 신입사원을 채용하였음 ⇒ 계속 퇴직강요 ⇒ 사직서 쓰지말고 근무를 충실히 하고 계속 사직 중용 때에는 노동부에 진정토록 권유	
	10/19. 결혼날짜를 알려자 회사 창립 이래 전례가 결혼하면 퇴직해야 된다고 퇴직을 종용함 ⇒ 계속 근무하고 퇴직강요 계속할 때는 노동부에 진정토록 권유	
	11/16. 결혼날짜를 알려자 퇴직강요함 ⇒ 응하지 않자 업무와 관계없는 곳으로 발령남 ⇒ 동료들에게 얘기도 못하게 하고 업무도 주지 않음 ⇒ 결혼식에도 아무도 참석치 못하게 함 ⇒ 업무없이 근무하고 있음 ⇒ 사직서 쓰지말고 퇴직을 강요할 경우 노동부에 고발토록 권유	
직장 내 폭행	11/13. 동료의사가 간호원을 감금시키고 폭행 ⇒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4주진단 및 추가진단(4주) 받음 ⇒ 검찰에 고소함 ⇒ 현재 의사는 불구속으로 조사중임 ⇒ 기소 여부가 미정임	
	11/15. 현장과장이 미성년자 다수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함 ⇒ 월급도 교묘히 빼앗음 ⇒ 강간죄로 고소하고 월급도 반환토록 청구할 것을 권유	
	11/16. 결혼후 근무하는 이유로 차장이 괴롭힘 ⇒ 그러던 중 사적인 전화를 받는다며 반말을 하면서 발로 찰 ⇒ 2주진단 받음 ⇒ 폭행죄로 고소토록 권유	
	12/26.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중 동료 남자직원과 다분 적이 있음 ⇒ 다른 부서로 옮겼으나 찾아와서 협박하고 따귀때림 ⇒ 회사측에서 사직서 강요해 제출함 ⇒ 회사다니고 싶은 의욕이 없다함 ⇒ 가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토록 권유	
	12/31. 상사가 업무동행을 요구하여 가던중 성폭행을 당함 ⇒ 이로 임신을 하게되자 수술함 ⇒ 퇴직을 강요함 ⇒ 불응하자 구타함 ⇒ 폭행죄로 고소했으나 강간죄는 고소만 한 상태임 ⇒ 고소토록 권유	
부 당 해 고	11/16.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내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귀 판정을 받았으나 학교측에선 신규채용 형태로 발령남 ⇒ 현재 발령장을 반려했음 ⇒ 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부에 "원직 복귀"의 해석을 요구하는 결의서 내도록 권유	
	11/21. 상사가 내기를 하자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않자 해고당함 ⇒ 사장에게는 업무능력이 없어서 해고한다고 함 ⇒ 사장에게 이유서를 내서 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토록 권유	
	12/3. 감원한다면서 사직서 강요 ⇒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을 종용하면 위법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유형	내용 및 조치
	이유를 서면으로 줄 것을 요구토록 권유 12/13. 회사운영이 어렵다며 감원시킴 ⇒ 근무기간은 2개월 되었음 ⇒ 수습기간이므로 구제키가 어려움
차별대우	10/16. 노조에서 단체협약 작성시 여조합원의 권리조항을 넣지 않음 ⇒ 여조합원들이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연서해서 위원장에게 시정토록 요구할 것을 권유 10/20. 노조에 여성국이 없음 ⇒ 여조합원수가 과반수가 넘음 ⇒ 조직시설은 규약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함으로 여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위원장에게 개선요구토록 권유 12/29. 경력사원으로 입사했으나 남자의 경우 모두 정식직원으로 발령내고 여자만 촉탁사원으로 발령냄 ⇒ 취업규칙상 촉탁사원에 대한 조항을 알아보고 본래 근로계약상 명백한 근거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촉탁으로 발령냈는지 여부를 알아볼 것을 권유
임금체불	10/22. 외관사원을 소개시켜 그 사람이 물건을 팔면(280만원치) 판매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판매사원이 200만원치 물건을 팔고 그만 둠 ⇒ 회사에서는 판매수당을 지급치 않음 ⇒ 취업규칙에 판매수당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도록 권유 11/1. 가내부업을 하는데 주인이 임금 40만원을 주지 않음 ⇒ 지급청구를 해보고 계속 지급치 않으면 소액심판청구토록 권유 11/1. 가족수당을 지급하다가 오빠가 있다고 그동안 지급한 수당을 반환하라 함 ⇒ 단체협약에는 지급대상이 됨 ⇒ 노조에 이 사실을 알려 시정요구토록 권유 11/2. 2달치 임금을 지급치 않음 ⇒ 소액심판청구토록 권유 11/2. 시간강사로 근무하는데 2달치 임금을 지급치 않음 ⇒ 소액심판청구토록 권유 11/13. 11년간 고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함 ⇒ 퇴직금 청구하니 재정 사정이 어렵다고 지급을 계속 미룸 ⇒ 노동부에 고발토록 권유 11/20. 회사가 월급인상 협상을 '90. 4월에 했는데 미루다가 9월에 확정되어 소급해서 지급한다 함 ⇒ 본인은 8월에 퇴직했는데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소급액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한해 지급됨이 통상이므로 지급받기 어려움을 고지 11/27. 회사상호만 바뀌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동일한 업무와 근로계약연속이므로 퇴직 연수 인정받을 수 있음을 고지 12/10. 6개월치 임금을 지급치 않고 있음 ⇒ 소액심판청구토록 권유 12/14. 퇴직금을 청구하니 지급치 않음 ⇒ 수급해서 가져가라 함 ⇒ 퇴직의사 밝혔으므로 수급의 무 효이니 재차 청구해보고 지급치 않으면 소액심판청구토록 권유 12/17. 1달치 임금을 주지않음 ⇒ 소액심판청구토록 권유 12/19. 3달치 임금을 주지않음 ⇒ 소액심판청구토록 권유 12/19. 시간의 근무를 하는데 회사측에서 일률적으로 남자는 1시간을, 여자는 30분만을 인정함 ⇒ 연장근로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토록 요구할 것을 권유 12/26.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하고서 그달치 월급을 안 줌 ⇒ 물건을 회수해야 준다 함 ⇒ 본인이 회사다니길 포기하므로 해고부분은 다통하지 않고 임금은 물건회수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함으로 지급청구 해 보고 지급치 않으면 소액심판청구토록 권유
기타	10/6. 산전후 휴가후 1년간 쉬고 싶은데 가능한 지 여부 ⇒ 산전후 휴가 포함한 1년간 육아휴직제가 있음을 고지 10/16. 여직원에게 대한 호칭을 미스X, X양으로 하는데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함 ⇒ 사내 직원들에게 계몽을 하고 우선 여직원들끼리만이라도 이름을 부르면서 점차 확산하는 것을 권유

인간과
미디어 환경



인간과 미디어 환경

미디어 교육이란 무엇인가?

성비으로 출판사·최창섭 저

김기태 (서강대, 성심01대 강사·언론학)

오랫동안 대중매체의 역기능적 폐해를 경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자가 되기위한 미디어교육을 강조해왔던 필자가 일반 수용자들은 물론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책을 내놓았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중매체의 속삭에 둘러쌓여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일상생활화되어버린 각종 매스 미디어로부터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 있다. 언어 및 행동차원은 물론 가치, 규범 등 제차원에서 대중매체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적 요인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대중매체환경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도 시의적절하게 출간된 책이라 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한국의 대중매체환경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시장'이 보장되어 치열한 경쟁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시청률경쟁, 흥미성경쟁, 내용저질화의 순서를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인쇄매체의 양적 폭발은 시사종합일간지를 비롯하여 스포츠 신문, 각종 주간지 등의 홍수로 이미 범람되어 있고 방송매체의 경우는 민방의 설립, 중

합유선방송의 도입추진 등 실질적인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변화에 대해 내용 및 제도차원의 감시활동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여러 형태의 제도적 방안이 강구된 바 있으나 그 중에서도 수용자 스스로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기초로 한 직접통제가 가장 실질적인 효력을 지닌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우선, 미디어 교육이란 정의에 대해서 이 책은 여러 관점을 소개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미디어에 접촉하는 각계각층의 수용자들로 하여금 미디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특성을 일깨우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요약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매체의 각종 효과론을 정리하고 그 바탕위에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방법 및 과정, 미디어교육 연구에 제 접근 영역 등을 서술하고 12개 외국의 미디어 교육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론적인 기본 서술에 이어 제5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매체환경을 살펴보고 동시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교육 현황과 교육에 사용되

고 있는 각종 자료들을 취합·정리해 놓았다.

제6장에는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를 위해 필요한 모두 195종의 저서 및 연구자료가 간략한 해설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되어진다. 여기다가 실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극복을 위한 제언을 간략히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대상 의 미디어 교육 교과과정 시안을 덧붙이고 있다.

이 책은 대중매체 수용자들에게는 주체적인 매체수용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고 미디어 교육 주관자들에게는 교육의 방법, 과정, 자료 등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관련연구자들에게는 연구를 위한 문헌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대중매체의 표 현양식이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로 편향되어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여성수용자들의 능동성·주체성 확립을 위해 이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여성 모두의 이야기 김지숙 모노드라마 「로젤」

박금옥 (중앙일보출판국 편집위원)



무대에 불이 들어오면 한 젊은 여자가 등받이도 없는 둥근의자에 위태하게 걸터 앉아 있다. 배경은 술집, 선반마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술병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지난 1월20일부터 대학로 소극장에 공연되고 있는 김지숙 모노드라마 「로젤」은 시종일관, 로젤이 그의 학교 시절의 친구를 만나 자신이 살아 온 반생을 고백의 형식으로 들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강지 연출.

이야기는 두 곳의 술집을 옮겨가며 진행되고, 로젤이 친구의 차에서 내리는 것으로 끝난다. 스토리는 간단하다. 바이올린을 배우며 음악을 위해 평생을 살고자 다짐하던 한 꿈많은 소녀가 권위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철저히 소외당하고 이용당하고 파멸해 갔는가를 리

얼하게 전개하고 있다.

어린 시절의 로젤은 음악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세계 제일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것을 꿈꾸며 바이올린 연습에 몰두하는 소녀였다. 그러나 그의 가정적인 환경은 결코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다.

군의관 출신의 의사인 아버지는 남성중심의 권위주의의 상징과 같은 인물로 그는 딸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 손이 붓도록 연습을 하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로젤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사는 늘 남편 몰래 눈물짓고 한숨짓는 그 자신은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며 사는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여성이다.

로젤의 단 한명 오빠는 태어나서부

터 부모의 각별한 사랑과 기대속에 의사가 되도록 교육받아 의사가 된다. 그 오빠가 대학시절의 첫사랑으로 한 여성이 임신을 하자 아버지는 그 뒷처리 처리에 기꺼이 나서 아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나 로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본인의 의사는 도의시당한 채 아버지에게 의해 단기 직업학교에 보내지고 마침내 한 호텔의 직원으로 취직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

여자가 특출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는 “여자교육은 고등학교로 충분하다”는 것이었고, 로젤의 가정에서는 아버지말씀은 곧 법이었고 아버지는 명령만 할 뿐 그에 대한 반항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돈을 모으고 모아 좀 더 좋은 바이올린으로 바꾸기를 거듭하던 로젤은 이미 학교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빛나는 재능을 인정받았고 음악 대학에 진학하여 훗날 작업연주가가 되어 음악회에서 평생을 살기를 열망하고 있었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언제나 남앞에서는 조용히 미소짓고 일만하는 어머니는 실은 신혼 초부터 신경안정제를 몰래 복용하며 많이 우는 모습을 딸인 로젤에게 들키곤 했다.

음악, 바이올린을 통해 「남과 다른 독특한 나만의 것」을 추구하던 로젤에게 직장생활은 어렵고 힘든 것이었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승진을 하는 사람은 늘 빈들빈들 즐기만 하는 불성실한 남자였다. 능력평가에 있어서 이 사회가 여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일에 실증을 느낀다.

이 무렵 그는 호텔에서 패션쇼를 하던 한 남자, 패션 디자이너인 볼프강

과 사랑에 빠진다. 로젤에게 첫사랑이었다. 바람둥이인 그는 모든 바람둥이가 그렇듯이, 만나는 매순간 여자에게 최선을 다해 여자들의 몸과 혼을 뺏는 남자였던 것이다. 사랑에 빠진 기간동안 그는 매일 로젤에게 장미꽃다발을 보냈다.

로젤은 첫남자 볼프강을 통해 사랑의 기쁨과 환희를 맛보나 짧았던 사랑의 기억은 볼프강의 변심으로 끝나고, 남은 것은 무력감과 패배감, 그리고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무성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뿐이었다.

로젤의 실연사실을 알고 그의 치마속으로 손을 넣는 등 함부로 대하는 지배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그는 직장을 떠나야 했다. 실직후 하루 16시간의 고된 여행안내원으로 일하면서 저녁 한때 피로를 풀기위해 술집을 찾아 한잔을 하는 버릇이 생겼고, 그 곳에서 로젤은 다시 드러머인 아이라를 만난다.

무뚝뚝한 남자지만 미친듯이 드럼을 두드리며 음악을 연주하는 그에게서 로젤은 강렬한 남성다움을 느껴 그에게 빠져들고 한여름 해변에서 그들은 금같은 나날을 보낸다. “그는 늘 나에게 명령만하고 나는 늘 복종했지만 행복했다”고 로젤은 회상한다.

이 사랑은 로젤의 임신으로 끝장이난다. 유산은 불법이었고, 그래서 로젤은 고향을 찾아가 오빠에인의 임신을 아버지가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의사인 아버지의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당한다. 결국 “자유를 잃기 싫다”고 아이를 거부하는 아이라는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방법으로 로젤을 유산시킨다. 유산후 몸을 상한 로젤은 아이라의

못매를 피해 집을 나오고 직장을 찾아 해마다 우연히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버림받은 어머니가 수용된 양로원에 취직을 한다. 종일토록 노망든 할머니와 씨름하던 그는 단골술집의 뚱뚱한 중년요리사와 동거게 된다. 결혼식도 올린다.

그러나 로젤은 낮에는 노망든 할머니들과 끝없는 실랑이, 이어 밤에는 종일토록 8백인분의 식사준비로 새벽에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남편의 식사준비와 등마사지 등으로 단 한시간도 편히 쉴 수가 없었다. 굴욕적인 성관계도 그를 괴롭힌다.

종일토록 몸에 땀 음식냄새를 없애기 위해 남편이 집안 구석구석에 뿌려대는 지독한 향수냄새, 대머리를 감추기 위한 여러개의 가발, 주말이면 달려가는 축구장 행차, 이 모든 것에 로젤은 진절머리가 난다.

남편은 또 지독한 자동차광이어서 로젤도 양로원에서 버는 몇 톨의 수입중 자동차를 살 돈 마련을 위해 단 한푼도 못쓰도록 하며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른다. 그는 가출한다. 남편에게 매를 맞고 이틀간 걸근한 후 로젤은 양로원에서 파면당한다.

이어 전자제품 조립공장에 취직한 로젤은 그의 딸처럼 “먹고 자고 싸고, 미친듯이 나사못만 돌리는 생활을 한다. 재미는 없지만 마음고생이 없어서 좋았지만, 더 열심히 일을 하고도 남자의 월급의 3분의 2도 못되는 수입에 항의하고 파면을 당한다.

그는 술값이 밀린 단골술집에 취직한다. 여기에서 그는 젊은 두쟁이 베르노를 만난다. 매일 장미꽃을 보내는 그는 로젤의 발가닥 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을 애무하며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재주를 지녔다. 로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베르노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그는 직업적인 노름꾼이었고 로젤을 이용하고 골탕먹이고 망쳐놓은 파렴치한이었다. 광패친구 십여명을 동원하여 로젤을 윤간케 하고 마음과 몸이 병든 그를 거리의 여인으로 내몰아 몸을 팔게한다.

이어 그는 등록되지 않은 채 몸을 판 죄로 경찰에 잡히고 사회보호소에 넘겨지고 결국 정신병원으로 이송 된다. 이제 막 로젤은 정신병원을 탈출한 것이다.

술 없이는 못살게 된, 어느덧 거리의 여자가 된, 30초만에 이미 늙고 초라한 모습의 로젤은 외친다. “남자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놔는데……. 이전 내가 아니다. 학교 졸업후 15년, 첫사랑 이후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 했는데……. 그러나 빗하나 써워서 이기지 못했어, 태어나서부터 안된다고 배웠으니…….”

막이 내리기 직전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내뿜는다.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던 말이니? 나도 다르게 살 수 있었던 것 아니니? 난 단지, 음악을 사랑한 소녀였을 뿐인데…….”

독일의 극작가 하랄드 뮐러 원작의 로젤은 단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 여성들 모두의 이야기이다. 가부장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 남성위주의 사회속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자각 보다는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삶을 살다 파멸해 간 로젤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시 되새기게 한다. 올해로 연극무대 데뷔 15년째가 된다는 김지숙씨의 차분한 연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다. ◆

사회자의 중립성 요구되는 토론 프로그램

매스컴 모니터회

본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11월 22일과 12월13일에 모임을 갖고 각각의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이었던 청춘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MBC TV), 주말 연속극 '야망의 세월' (KBS 2TV), 월화 드라마 '불의 나라' (KBS 1TV)와 모니터 대상이었던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KBS의 '심야토론', '생방송 여성', MBC의 '여론광장' 등에 대한 결과를 토론했었다.

모니터 대상 드라마를 비롯해 최근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의 전반적인 추세가 건전하고 바람직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토론시 사회자들의 중립성 유지, 사회적으로 참예한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접근과 해결책 제시, 토론이 원만하게 성립되기 위한 참석자들의 적절한 선정등에서 여러가지 미흡함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되었다.

A. TV 드라마

1. MBC TV 「우리들의 천국」

건전하고 발랄한 대학생들의 모습을 현실감있게 보여주고 있는 이 드라마는 기존의 청소년 대상 드라마에 비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층의 실상과 그들의 고뇌를 잘 표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가족내의 위계질서를 보여줌에 있어 부모의 권위주의에 의한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자율적인 질서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자유분방한 가족의 분위기를 보여주면서도 그 속에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등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겠다.

아버지역을 맡은 박인환의 코믹하고도 진지한 역할이 돋보이고 중학생층까지 온 가족이 흥미를 갖고 함께 보기에 좋다는 평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루는 프로그램임에 틀림없지만, 부유층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등장함으로써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여지가 있고, 대학생활의 낭만과 멋이 너무 많이 부각되는 데서 오는 현실과의 괴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 KBS 2TV 「야망의 세월」

60년대의 정치·경제 상황을 최씨 박씨 두 가문의 격변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이 드라마는 말장난 위주의 내용 전개에서 탈피, 내면의 의식을 밀도있게 묘사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퇴폐적인 스탠드 비에서의 무희의 모습, 강대들의 주도권 쟁탈의 한 장면으로서 손가락을 으깨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점, 마담으로 나오는 여인의 과다 노출과 원색적인 대사 등 주말연속극의 방영시간대를 고려하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말의 오후 7~8시는 온가족이 함께 모여 TV를 시청하는 시간대라는 것을 감안한 내용을 선별하여 방송하는 제작진의 태도가 아쉽다고 하겠다.

3. KBS 1TV 「불의 나라」

이 드라마는 원래 의도하는 바와 같이 사회비판의 범주에 드는 드라마라기 보다 코믹한 활극의 성격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은 초반부로서 앞으로의 내용전개가 기대된다.

11월12일 방영분 중 주인공 찬규(윤승원 분), 그의 형 친구인 길수(이원용 분), 어머니(박주아 분)가 '지랄'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면서 대화



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악의없는 욕으로 들어날 수도 있었지만 언어순화의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같은 날 방영분 중 찬규가 차에 부딪혀 응급차에 실려 들것으로 운반되는 도중 의사가 간호사에게 응급수술을 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출혈 쇼크 방지까지 하는 등 법석을 떨었는데 나중에 타박상 정도의 부상으로 넘어가는 장면은 억지로 만들어낸 지나치게 인위적인 연출이라는 인상이 주었다.

B. 시사토론 프로그램

1. KBS 1TV 「심야토론」

12월8일은 '공직자 윤리는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었다.

우선 사회자가 공직자의 부정·부패의 원인을 저임금에 따른 급전의 유혹이나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가 너무 크다는 등으로 파악함으로써 공직자가 바른 윤리관을 갖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논지의 쏠점을 흐렸다. 물론 한 사회의 공직자가 부패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논제로 토론하게된 동기는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파렴치한 부정·부패행위에서 비롯되었을 터인데 사회자가 배경에 대한 인식이 없이 자신의 의견을 무리하게 전개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공직자에게 동정론을 퍼는 인상을 주었다. 사회자가 토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사회자의 중립성 유지와 적절한 대화의 유도과 전개가 아쉬웠다.

또 토론인사 6명중 5명이 학자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애초에 배제된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토론자중에 공직자의 윤리성이 위험수위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두명인데 비해 방청객의 응답자 네명은 모두 위험수위에 놓여있다고 대답함으로써 국민 여론으로 대신할 수 있는 방청객의 생각과 토론자들간의 생각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현실인식의 차이점을 노출시켰다. 이로 인해서 시청자들과 토론자들간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고, 토론이 주제에 관해 실제적인 접근을 못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으로 치우쳤다는 느낌을 주었다. 따라서 제작자들은 토론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인사의 참여와 논제의 이해 당사자들을 배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빈번한 외래어·외국어의 남용이다. 12월 1일에 방영된 '주택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의 경우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이해 못할 외국어를 계속 사용하여 시청자들의 어안을 병병하게 만들었다.

2. MBC TV 「여론광장」

12월8일에 방송된 여론광장은 '관·검사의 도덕성'을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논제를 '관·검사의 도덕성'으로 한정함으로써 문제제기의 구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고 토론인사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견해와 답변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용이했으며, 이에 따른 해결의 방향점을 모색함으로써 시작과 끝이 잘 연결된 토론이었다.

사회자는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때 나름대로의 판단과 비판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와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자가 이번엔 조직폭력배와 관련되어 구설수에 오른 검사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해서 공개석상에서 변호하는 듯한 말은 욕의 타였다. 사회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토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판단은 배제해야 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하면 좋겠다.

또 12월 1일에 방영된 '마지막 소원'에서 논의된 학교주변의 조직폭력배 문제는 문제제기는 되었으나 해결책은 관념적인 표현으로 그쳤다. 예를 들면 불량배들이 돈을 달라고하면 주라고 가르치는 어머니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돈으로 해결하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인 학교 주변의 불량청소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지 못했다. 토론이 말 그대로 토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토론자들의 성의있는 토론내용의 준비와 제작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신영순 회장

경기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상호간의 협조와 정보교환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1985년 9월 11일에 도단위 12개 여성단체를 회원단체로 하여 출범하였다.

이어서 1986년 2월25일에는 경기도의 배려로 경기도청내에 사무실과 책상 등 각종 집기까지 지원받아 현관식을 가졌으며 그 해 3월25일에는 수원 시민회관에서 500여명의 여성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활성화 촉진결의대회"를 갖고 자율적인 참여와 열성적인 봉사정신으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1986년 4월 신영순 현 회장이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지금에 이르고, 1990년 4월14일에는 경기도의 배려로 도여성회관에 90여평의 사무실을 할애받아 도단위 7개 여성단체와 함께 입주하였다.

그동안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각종 대규모 행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기여하였다. 특히 '86 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 제70회 전국체전과 '86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준비에서부터 행사를 마칠 때까지 여성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또한 경기도와 같이 "경기도주부의 날" 행사를 경기도여성상 선발전상, 주부기에 경진대회, 기념식 및 축하공연

등의 알찬 내용으로 5회에 걸쳐 성대하게 치루어 왔으며,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문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지원해왔다. 저소득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사랑의 모자학교"를 운영하고 생업자금을 무상 지원하여 자립의 길을 터 주기도 하였으며, 심장병어린이 돕기운동을 전개하여 운동회, 바자회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 780여명의 심장병어린이에게 새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다.

이 외에도 도내 거주 졸업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력 배양을 위한 훈련을 3회에 걸쳐 실시하여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여성의 사회참여,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 여성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여성단체 임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단체회원 교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여성단체 활동의 발전적인 방향 정립을 위해서 "여성단체 사례발

표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과소비·폐해향락풍조추방운동과 법질서 지키기, 건전소비생활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결의대회, 교육,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0년 9월 중순에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구호와 수해복구를 위해서 85,000여명의 도, 시, 군 여성단체회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둬으로써 경기도 여성의 단결된 힘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도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여성활동을 전개해 온 결과였다고 하겠다.

지난 11월29일에는 수원시민회관에서 500여명의 여성단체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여성대토론회를 갖고 여성들이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금년 1월9일에는 도, 시, 군 여성단체장 400여명을 초청하여 신년인사회를 갖고 다가오는 지방시대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거울삼아 경기도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도, 시, 군 여성단체의 바람직한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분담의 확대와 그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계획이다.

향을 묻는다든지, 방청객들이 연극에 관심있는 사람들이거나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참석했다든지, 아니면 방청객들과 출연자간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알고 싶은 것을 얻도록 하는 방법 등이다. 그러나 이 프로는 시종일관 사회자와 출연자만의 대화로 일관해 제작진의 무성의를 노출시켰다. 또 단 한번의 질문 기회도 없이 이들의 대화를 따분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방청객의 모습을 보면서 방송국의 방청객 대접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방청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참석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방송국의 요청에 의해 참여하는 경우인데 방청객이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틀러리 형식으로 앉혀 놓는 일은 지양했으면 한다.

기타 방송의 초대석이나 토론회 등에서 출연자들이 적절치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회자들이 제지를 발휘해 적절히 대화를 유도한다면 좀 더 무난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BS 1TV '언제나 젊음'에서는 12월8일 노인들의 취업문제를 다루면서 참석자들이 노인을 '쓴다', '사용한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했는데 사회자가 한번쯤 채용이나 고용이라는 말로 유도를 했더라면 쉽게 고쳐서 방송이 되었으리라고 본다.

12월11일 MBC TV '아침의 창' 초대석의 초대손님이 연말 연시 모임에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로 시종일관 말을 하는데 이때도 진행자가 '함께 간다'든가 '동반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바꿔주었다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문제가 주부들뿐 아니라 모든 여성을 망라한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방송시간대를 조정해 주었으면 한다.

4. KBS 2TV 「11시에 만나다」

12월11일에는 연극인 최영인씨가 초대되었다. 출연자 자신에 관한 일방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시청자는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지나치게 개인적이며 전문적인 이야기로 일관해 그 출연자를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로 생각되었다.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면 사회자가 최근의 연극계 동

3. KBS 2TV 「생방송 여성」

12월1일 '소신혼수, 그렇게 어렵습니까?'란 제목으로 방송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현실은 소신혼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참석자들은 모두 소신혼수를 했기 때문에 한결같이 혼수용품들 준비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그 내용을 보고있자면 모든 사람들이 소신혼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 내지는 소신혼수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현실은 소신만을 갖고 혼수를 장만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소신혼수를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게되는 이유, 또 그러한 경험담, 이에 따른 극복방안들이 제시됐다면 제목에 알맞는 풍부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혼수를 소신있게 하지 못했던 경험담을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전화통화나 녹음을 통해서라도 준비했더라면 생생하고 현실에 맞는 내용의 방송이 되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 프로그램이다.

12월8일에는 '나의 아이, 우리 아이 탁아정책 어디까지'가 방송되었다. 기존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탁아정책을 소재로 다룬 것은 매우 적절하였다. 또한 탁아정책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등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취업여성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이라 할 수 있는 탁아문제를 다루었다는 점 자체는 높이 살만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대는 토요일 오전시간대로서 취업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볼

결손가정 훈훈한 사랑나누기

생활하기 바빠 따뜻한 대화는 커녕 눈 한번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생활하던 모자가구가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신영순)가 마련한 「사랑의 모자학교」에서 모자간의 끈끈한 정과 함께 같은 처지의 모자가구와 돈독한 우애를 나눴다.

지난 8월 13, 14 양일간 의왕시 아른의 집에서 열린 「사랑의 모자학교」는 경제적 빈곤, 자녀교육문제 등 파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권모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대인관계 훈련을 통해 모자가족의 원활한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저소득 모자가정 36가구 7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은 「사랑의 모자가정 만들기」, 「청소년의 꿈과 고민」, 「바람직한 사랑의 모자대화기법」 등의 강의를 듣고 모자간 사랑의 편지쓰기, 레크리에이션, 집단상담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도 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 처음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은 「사랑의 모자학교」를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인데 앞으로는 교육과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후원회조직, 자매결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과 취업 등을 앞선해 주는 등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경기일보 1990년 8월 16일자)

고양·구리·광명· 미금여협, 수재민 돕기에 앞장서

도내 각 시·군의 여성단체들이 수해를 겪어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급식·급수봉사 의류봉사를 비롯, 가재도구정리, 청소, 아이돌보기 등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조를 편성해 고양·광명·미금·구리 등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들은 수해가 난 날부터 실의와 슬픔에 잠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식사와 의류를 제공하는 등 같이 밤샘까지 하면서 일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도여협은 지난 9월 12일 도여성단체장들이 고양군 수해지역을 방문, 김치와 빨래비누 등을 전달했고, 도복지회(회장 안정현)도 고추장, 밀치볶음 등의 부식과 샌드위치를 대량 제공했다.

구리시 여협은 88년말부터 무의탁

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해온 「사랑의 식당」을 수해지역에 운영,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는가 하면 알뜰시장에 내놓기 위해 준비한 의류 1천여점을 선뜻 기증했다.

광명시 여협은 광명시내 11개 지역 수용소별로 1개조직 봉사반을 편성해 급수봉사, 취사준비, 청소, 의류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명시 적십자 부녀봉사회는 의류봉사반을 편성, 응급처치와 함께 구급약, 박카스 등을 지원해 주었다.

미금시 여협은 9월 11일 밤부터 미금국교에 수용돼 있는 수재민 2천여명에 밤잠까지 설치하며 급식·급수봉사와 함께 침식장소 마련 등을 도와주고 있으며 라면, 쌀, 고기, 김치 등을 준비해 매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여성단체들도 의류, 이불, 일회용식기, 구급약, 비누 등 생필품을 전해주면서 각 수해 지역에서 내집일처럼 청소를 도와주고 가재도구를 닦아주며 아이까지 돌보는 모성에 발휘하고 있다.

각 여성단체들은 수해지역이 원상복구될 때까지 그들 앞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경기일보 1990년 9월 17일자)

창립 5주년 기념행사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창립 5주년 기념행사가 9월 25일 상오 수원시민회관에서 이재창 도지사, 신영순 도여성단체협의회장, 각 여성단체장, 여성단체회원 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이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도여협이 지난 85년 9월 창립된 후 명실공히 도여성단체의 구심체로서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며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지난 수해로 상처와 실의에 빠져있는 이웃 이재민에게도 다같이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사랑의 손길펴기운동에 여성단체 회원들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경과 및 사업보고, 감사패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일보 1990년 9월 25일자)

에너지절약 캠페인 개최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범도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이 10월 15일 하오 도내 36개 시·군 7백70개 전지역에서 여성단체 및 부녀회원 2만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캠페인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1백가지 실천사항」등의 전단이 배포됐다.

(경기일보 1990년 10월 16일자)



직거래운동은 진정한 삶의 연대운동으로 발전해야

윤희진 (한살림소협 간사)



직거래운동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

요즘 직거래운동이 마치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여러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다. 대부분의 단체가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유통과정에서 오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 농산물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오기까지는 5~6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이 올라 결국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주어지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이런 복잡한 유통과정을 줄여 생산자에게는 보다 높은 가격을 소비자에게는 보다 싼 가격을 주자는 것이 직거래운동의 발상이다.

그런데 막상 직거래사업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단체가 소비자에게 시중보다 싼 값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소비의 규모가 작을수록 운송경비가 더 많이 발생하여 오히려 시중가격보다 더 비싸게 공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소

비자의 구매력을 얼마나 조직하는가에 따라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문제는 오히려 비싸게 팔고자 하는 생산자와 싸게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이기적 관계에 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다보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 소비자가 계속 싼 가격을 요구한다면 생산자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품질도 떨어져 소비자는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게 된다.

문제는 직거래운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싸다, 비싸다 등의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보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생활과 생명을 책임지는 인간

적인 관계를 만드는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소비자는 생산자가 어려운 농촌현실 속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생산비를 보장해주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나가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일을 풀어야

우리나라의 농산물 직거래 경험은 아직 미천한 단계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짧은 경험과 외국의 농산물직거래단체들의 자료를 토대로 몇가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켜야 할 원칙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친한 만남과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는 생산자를 자주 방문해 생산자의 생활을 이해하고 생산과정에도 일부 동참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생산자는 자신의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얼굴을 알고 한 식구처럼 지내도록 한다.

둘째, 계획적인 소비와 생산활동을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단계적으로 의논하여 생산·소비계획을 세우고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셋째, 생산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다.

공급되는 농산물은 생산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대신 생산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넷째, 생산자와 소비자는 각각 물품을 생산,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활동의 내용을 확장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모임을 통해 의식을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넓혀나가야 한다.

다섯째, 생산자와 소비자는 확대활동을 지역에서 해 나간다.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의 잦은 만남을 통해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일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 나감으로써 민주적인 운영을 하도록 한다.

한살림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의 직거래운동

한살림소협은 1986년 12월 농촌지역 활동가들에 의해 직거래사업이 시작된 데서 비롯되어진다. 처음에는 일반미, 무농약쌀, 유정란, 참기름, 들기름 등 몇가지 안되는 품목을 받을 수 있게 공급하면서 소비자를 조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88년 소비자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이용·운영에 의해 직거래사업을 펼쳐나



직거래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싸다, 비싸다 등의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보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생활과 생명을 책임지는 인간적인 관계를 만드는 일이다.

가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3천 5백세대, 출자금은 9천3백만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전국에 150세대이다.

현재 직거래로 공급되는 물품은 주로 농약을 치지 않거나 덜 친 농산물(쌀·잡곡·야채·과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된장, 고추장, 참기름, 들기름, 조청, 두부, 빵 등),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어물(미역, 김, 멸치, 오징어), 고기류(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연 200가지가 넘는다. 생선을 빼면 중요한 먹거리는 거의 공급되는 셈이다. 또 먹거리 뿐만 아니라 생활과 생존터전을 지킬 수 있는 생활용품(천연세제, 재생휴지, 면행주)을 공급



하고 있다.

공급방법은 5세대 이상 공동체가 한꺼번에 주문한 것을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요일에 대표집으로 배달하는 것이다. 조합원은 공동체를 통해 예약주문하고 공동구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조합원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자신의 생활을 하나씩 바꾸나간다.

그러므로 조합원이 되려면 5세대 이상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출자금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직 소수의 생산자와 소비자만이 자신의 이기적인 입장을 떠나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는 물품이 좋고 나쁨에 따라 편중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생산물이 남기도 하고, 생산자도 가끔 더 비싼 값으로 계약된 농산물을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풀어나가는 중심 활동가들에게는 참을성 있고 굳센 노력이 필요하다.

직거래운동은 여러 단체가 협력해 나가야

직거래운동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책임있는 소비자를 조직하는 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계획하고 생산하는 일, 물품이 남거나 모자랄 경우의 처리문제 등 무엇보다 쉬운 것이 없다. 더구나 우무과이라운드협상으로 농산물이 전면적으로 수입되면 생산기반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생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소비량의 조정, UR에 대한 공동대책 등 직거래 단체들간의 협력이 요청되어진다. 단체마다 사회에 대한 입장과 활동내용이 다르더라도 구체적인 일을 통해 서로 연대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단체가 직거래운동에 참가해서 갈라진 사회가 하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협의회소식

통일여성안보회 가입 환영회

본회의 26번째 회원단체가 된 통일여성안보회의 가입을 환영하기 위한 다과회가 12월11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본회 임직원 및 통일여성안보회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환영회에서 본회 김경호회장의 가입증 전달이 있었다.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캠페인

본회는 새질서 새생활실천 관련사업으로 지난 12월14일 명동 YWCA 강당에서 본회 회원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명동일대에서 벌였다.

이 캠페인은 하반기동안 각 회원단체가 각 단체별로 꾸준히 추진해 온 과소비 퇴폐문화 추방운동을 26개 단체

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캠페인을 함으로써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91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자 개최되었다.

습관성 중독물질에 관한 예방교육

본회는 청소년을 술·담배·마약 등 습관성 중독물질로 부터 보호하고자 지

난 12월20일 용문고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연을 맡았던 김경빈 박사(서울국립정신병원)는 한창 성장기에 접어든 학생들이 본드나 술, 마약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게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청소년들이 술·담배·마약 등을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경로사시 화환과다진열 자제협조서한 발송

본회는 경로사시에 화환이 지나치게 진열됨으로써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비용이 늘어남으로 국회의원, 기업체장, 사회단체장 등 사회 지도층인사 2000여명에게 이를 자제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는 서한을 '90년 연말을 기해서 발송했다.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과소



정잡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캠페인



통일여성안보회 가입 환영회



중문고에서 열린 습관성 중독물질에 관한 예방교육

비, 사치, 허례허식을 근절시키고 절약하는 생활태도,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교통질서의식함양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티카 제작



여협에서 제작한 스티커

본회는 청소년을 불량문화, 비디오, 술, 담배, 마약 등으로 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를 홍보하는 책갈피꽃이 35,000 매를 제작하였다. 이와 함께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 양보운전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만5천매의 교통스티커를 제작했다.

이 스티커 및 책갈피꽃이는 운전자와 학생들에게 널리 배포해서 교통질서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조성을 위해 많은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혜심원 방문

본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불우한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그동안 계속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혜심원을 지난 12월20일 방문하였다.

후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혜심원은 약 50여명의 고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집을 새로 증축하는 과정이라서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본회는 이 곳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장난감, 학용품 및 기타 용품 등을 전달하고, 이와 함께 아동들에게 친절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하도록 건강교육을 실시하였다.

매스컴모니터활동 보고서 근로여성 차별 사례집 발간

지난 12월 본 협의회에서는 1984년 11월부터 벌여 온 매스컴 모니터링 사업을 정리한 「매스컴 모니터 활동 보

고서」와 1986년 8월에 개설된 근로여성 고발창구에 접수된 고발사례를 중심으로 한 「근로여성 차별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본회의 매스컴 모니터회는 매년 1회씩 7회에 걸쳐 실시된 교육으로 배출된 매스컴 모니터 자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TV를 비롯한 라디오, 잡지, 광고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모니터하고 토론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언론사, 연출가, 작가, 관련기관 등에 송부하여 현대적 의미의 바람직한 여성상 구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그간의 활동을 총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근로여성차별사례집은 본회 고발창구 상담 사례들을 정리, 수록하였고 근로여성의 실태조사를 통해 성차별을 보는 사회적 시각,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방향 및 실천전략 등을 수록하여 근로여성의 차별 철폐 지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수원동의 혜심원 방문

우리들의 광장

- 대한간호협회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여성문제연구회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대한여학사협회
- 대한조선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한국우먼스클럽
- 가톨릭여성연합회 (원고도착순)

대한간호협회

새질서 새생활 운동 적극 참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의 본질인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실천봉사활동에 앞장서 오면서 전국지부를 통해 대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벌여 왔는데 지난 12월20일에는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70여개 여성단체회

원 및 간호사 등 4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를 심어 주고 사랑을 실천해 온 숨은 봉사자 5분을 모시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좋은반응을 얻었다. 이날 오후에는 노인보호시설인 천사요양원을 찾아 1백여명의 노인에게 겨울 누비조끼를 전달하고, 간호활동 및 건강관리 강연,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 흥겨운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부별로 소년·소녀가장들, 교도소 및 양로원 방문, 영세모자 세대 돕기, 노인건강상담, 장애자 지

원사업 등을 벌이면서 새질서·새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광주보상금 확정에 대해 항의

지난 12월1일 미망인회는 회원 3백명의 '광주보상금 확정에 따른 우리의 결의' 대회를 갖고 이어 국가보훈처에서의 항의 농성과 12월7일에는 경기·인천 회원이 국회의사당 및 민자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일선장병 위문

미망인회는 지난 12월12일 제61차 이사 및 지부장 연석회의를 갖고 주요 예산집행을 보고 하고 이튿날 인천에 소재한 해군함대를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대한간호협회 새질서 새생활 운동

우리들의 광장

가두캠페인 전개

미방인회는 지난 12월20일 연말연시 검소하게 보내기와 불우이웃 돕기 가두캠페인을 서울 시내 주요번화가와 백화점 앞에서 실시하였다.

여성문제연구회

알뜰바자시장 개최

여성문제연구회에서는 과소비 추방 및 새생활 새질서 운동의 작은 실천으로 지난 12월8일 연구회가 운영하는 남성새마을유아원에서 알뜰바자시장을 개최하였다.

원생들과 자모들이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품들을 기증하고 박정자회장을 비롯한 여러 이사들이 기탁한 물품 1,500여점을 모아 개최한 알뜰바자시장에서는 많은 주부들과 학생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

박회장과 원생, 자모들은 "새질서 새생활" 배지를 손님들에게 달아주었고 관할 사당동회와 구청의 협조도 있었다.

물건을 사러나온 한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 신지 않는 신발 3켤레를 즉석에서 기증하기도 하는 등 나눔의 아름다움을 한층 높여 주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1991년을 '가정교육 부활의 해'로 삼아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1991년을 '가정교육 부활의 해'로 정하고 올 한해동안 가정교육의 부활에 앞장서고자 한다.

최근 늘어나는 각종 범죄, 폭력 등으로 우리 사회는 불안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청소년문제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문제는 우리 사회내

교육의 부재 즉, 학교교육이 인격교육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입시교육위주로 치달고 있음에도 문제점이 있으나, 이에앞서 가정교육의 부재가 더 큰 원인임을 깨달아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솔선수범하여 올바른 생활태도로 건전한 자녀교육의 기틀마련과 건전사회기풍조성을 위하여 1991년을 '가정교육 부활의 해'로 정하였다.

앞으로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우리사회내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와 입시제도의 개선으로 청소년 탈선예방 및 부모·자녀를 대상으로하는 정기교육 강좌를 개설, 가정교육부활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보다 적극적인 가정교육 부활에 힘쓰고자 한다.

지방의회선거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고발 창구' 운영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지난 1월15일

우리들의 광장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우리 농수축산물 애용을 위한 겨울철 영양요리 발표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의 협조를 받아 우리 농수축산물 애용을 위한 겨울철 영양요리발표회를 지난 12월11일, 서울 63빌딩 전시장에서 일반인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가정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 농수축산물 애용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요리강습과 함께 37종의 요리가 전시되었는데 모두 제철의 농수축산물을 이용하여 간편한 조리법으로 새로운 맛을 선보였다.

우리 농수축산물을 애용하자는 운동은 우리의 농어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토양에서 생산된 것이 우리 제철에 가장 잘 맞다는 건강상의 이

유로도 꼭 필요하다.

또한 식생활의 편의성 추구하고 각종 수입식품이 범람하는 식생활추세에 밀려 점차 위축되어 가는 우리 농수축산물을 이용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 농산물 애용을 위한 사찰음식잔치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가 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불교신문사와 공동으로 「사찰음식잔치」를 개최하였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합시다"라는 표어 아래 12월20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된 사찰음식잔치에는 6백여명의 일반인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부산 범어사 등 전국 14개 사찰의 비구니스님들이 직접 만든 메밀종떡, 초잠채 등 50여가지의 사찰음식이 소개되어 우리 농산물 애용과 건강식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사찰음식잔치는 우리농산물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일반인들의 식생활향상과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1991년도 두부요리 카렌다 발간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두부요리 카렌다와 포스타카렌다를 제작하여 회원 및 여성단체, 급식학교 등에 배부하였다.

두부요리 카렌다에는 두부명란젓찌

부터 다가오는 지방의회선거가 민주주의시대에 부응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불법·부정선거 고발창구'를 개설, 선거풍토를 호리게 하는 불법, 타락선거사태를 접수하고 있다.

고발내용은 ●금품살포(음식물, 교통편의제공 등), ●선거폭력●관권개입(선거관련 서류훼손 등), ●불법집회, 불법선전물(선거목적의 동창회, 가두방송 등), ●사전선거운동 등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도 지방 유권자의 선거의식을 계몽, 선도하는 교육을 각 지방 지회·지부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한다.

제91기 파출회원 교육

최소득중 주부의 소득증대와 일손을 필요로 하는 각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가정입주자 및 파출회원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지난 1월17일과 18일 양일간 본회 강의실에서 제91기 파출회원을 모집, 교육하였다.



식생활개발연구회-사찰음식잔치



여성문제연구회의 알뜰바자회

불법·부정선거 고발 창구-주부클럽

우리들의 광장

개, 두부냉이무침, 두부샐러드, 두부냉채, 순두부찌개, 두부호박찜에 대한 요리칼라사진과 만드는 법이 수록되어 식생활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대한여학사협회

「새질서 새생활운동과 참여의식」에 대한 강연회와 과소비 추방에 대한 좌담회 개최

대한여학사협회는 지난해 12월 5일에 「새질서 새생활운동과 참여의식」이란 주제의 강연회와 과소비 추방을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연사는 본회 박용언 회장이었고, 토론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과소비 경향의 원인은 열등의식에서 온 것이라며 과소비 결과는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저지른 문제이므로 우리가 자성·자각하여 밝은 미래 사회와 건강한 지구를 이룩하고 보존하는데 다함께 선두주자가 될 것을 결의했다.

「바른 삶 살기운동」을 올해 실천요강으로

대한여학사협회는 1월 정기이사회를 1월14일 박용언 회장실에서 가진 후 이어 김인숙 고문실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신년인사를 나눈 후 박용언 회장은 이사회에서 「바른 삶 살기 운동」을 올해의 실천 요강으로 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기(Young Adults)에 대한 KAUW Forum

대한여학사협회의 Forum Committee가 주관하는 영어 공개토론회가 1월17일 주한 미국공보원 강당에서 열

렸다.

토론자는 사카루 마수드(Shahrukh Masood·방글라데시인·대학생), 앨리스 재희(Alice Jae-Hee·하바드대 건축학사), 앤 E. 더스(Anne E. Dorse·미대사관 경제담당 일등서기관)와 김성희씨(뉴욕타임즈 서울스텔 리포터) 등.

아버지가 외교관인 사카루 마수드양은 “방글라데시에서는 교육받은 여성 일지라도 대학졸업 후 집안일을 하도록 기대되어 대부분 뚜렷한 직업관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점차 변화되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외의 발표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여성의 경우 가정과 사회의 일을 양립할 때의 어려움과 사회에서의 남녀 차별 대우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국제 감각을 키워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여성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조산협회

제2회 조산사 국가고시 실시

올해로 두번째 실시되는 제2회 조산사 국가고시가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Tel. 252-1643)에서 오는 1월29일 오전 9시에 일제히 시행된다.

이번 응시자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조산수습의료기관(전국 15개소)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수습생으

우리들의 광장

로서 총 191명이다.

서울지부 제46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조산협회 서울지부(지부장:김명재)에서는 “조산사의 세계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제46회 정기총회를 1월31일 오전 10시30분에 대한간호협회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9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에 이어 지부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 및 회원관리와 회원 권익옹호 등에 중점을 둔 사업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국제여성총연맹 회장·임원 본회 방문

국제여성총연맹(GFWC) 회장과 임원의 본회방문 환영회가 지난 12월 8

일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 호텔에서 있었다.

국제회원국간의 이해증진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내한한 국제회장 펠리스 제이·듀넨호퍼여사는 환영회에서 “여성들의 단결은 모든 여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게하며 남녀가 동등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미래, 여성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 그리고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세계가 날로 가까워지고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세계 시민이 되어 각기 자국에만 국한된 책임을 지는 안될 것이라며 세계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였다. 한국여성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이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며 21세기 GFWC는 어린이교육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므로 한국본회에서 환경문제와 어린이·청소년교육을 목표로 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과소비추방 가두 캠페인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회는 지난 12월24일 새질서 새생활 실천결의 모임 을 갖고 백화점 출입자와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과소비추방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회원들은 계도용 책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면서 과소비 퇴폐문화 추방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였다.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회는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한 바 있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절제회 포스터대회 개최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는 지난 12월 26일 절제회 포스터대회를 개최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 술·담배·마약의 해독을 홍보하였다. 또 절제회 장학생들에게 4기분 장학금을 지급하며 절제 생활에 힘을 줄 것을 다짐하였다.

금주·금연 팸플릿 배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는 지난 12월 27, 28일 양일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후원으로 금주·금연·마약퇴치를 통한 절제생활의 실천을 계몽하는 팸플릿 10만부를 전국지회와 해외지회에 배포하였다.



GFWC 회장·임원 방한 환영회 -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여학사협회 - 영어공개토론회

편집후기

-올해는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체 선거가 실시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성 후보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쿠웨이트에서 방류된 원유로 온몸이 뒤덮힌 물새의 사진을 보면서 전쟁으로 희생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점점 험해져 가는 세상이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들로 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힘과 뜻이 더욱 간절할 때입니다.

월간여성 • 1991년 1·2월호 통권 282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 김경오

편집인 : 김금래

인쇄처 : 코리아 헤럴드

사진식자 : 한라7(株)

발행일자 : 1991년 2월 10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강로 3가
40-427, 428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 796-4995

● 편집 :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 김전주

위원 : 김효자 / 박금옥 / 박영혜 / 박용옥 /

신동식 / 오영자 / 조광섭

담당 : 정우영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숲속의 궁전!



예일예식장



* 예일만의 자랑

- **각층에 식당이 하나씩**입니다.
- **완벽한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00대 동시 주차시설)
- **예일이 직접 회관을 운영**합니다.
- **셔틀버스를 무료운행**합니다. (대공원후문 → 예식장 왕복)
- **다양한 드레스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전문미용사**를 두고 있습니다.

● 예약문의

453-2121

453-9871 ~ 5



성동구 구의동 58-16